

#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박주철 | 권정교 | 유승혜

2023. 12.

www.kipf.re.kr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박 주 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권 정 교 세정연구팀 세무사

유 승 혜 세정연구팀 위촉연구원

# 목 차

I. 서론	1
II.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	4
1. 조세	6
가. 신고의무	6
나. 제재사항	16
다. 신고서식	17
2. 사회보험	23
가. 신고의무	23
나. 제재사항	29
다. 신고서식	30
3. 조세-사회보험 통합현황	35
가.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비교	35
나. 우리나라의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RTI)	39
III. 해외사례	45
1. 통합형 국가	45
가. 영국	45
나. 스웨덴	52
2. 분리형 국가(징수업무 지원)	56

가. 프랑스 .....	56
나. 덴마크 .....	63
다. 일본 .....	71
3. 국가별 납세협력 현황 .....	80
IV. 개선방안 .....	83
1.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 .....	83
가. 간이 지급명세서 중심 통합 .....	85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심 통합 .....	86
2. 소득내역 확인을 통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완화 .....	92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면제 .....	96
4. 사회보험의 업무포털사이트 일원화 .....	99
5. 개선방안의 한계 .....	100
참고문헌 .....	102

## 표 목차

〈표 II-1〉 비과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7
〈표 II-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 .....	10
〈표 II-3〉 신고서식별 신고 및 제출 대상소득 비교 .....	13
〈표 II-4〉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중 건강보험 부과대상 항목 .....	25
〈표 II-5〉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대상 유형표 .....	26
〈표 II-6〉 휴직 관련 사회보험료 특례 비교 .....	29
〈표 II-7〉 사회보험별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	30
〈표 II-8〉 소득변동 시 신고의무 .....	36
〈표 II-9〉 근로소득 관련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서식 .....	37
〈표 II-10〉 근로소득 관련 조세·사회보험 신고기한 .....	37
〈표 II-11〉 근로소득 관련 신고의무 불성실 제재사항 .....	39
〈표 II-12〉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시행시기 유예 .....	42
〈표 III-1〉 영국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표 .....	52
〈표 III-2〉 프랑스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 .....	63
〈표 III-3〉 덴마크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 .....	70
〈표 III-4〉 일본의 연 소득별 공제한도 및 소득세율 .....	72
〈표 III-5〉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및 요율 .....	74
〈표 III-6〉 국가별 원천징수 관련 납세협력 .....	81

〈표 IV-1〉 조세의 신고서식 비교 .....	83
〈표 IV-2〉 소득별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제출기한 .....	85
〈표 IV-3〉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 보완 시 서식별 제출 대상금액 비교 .....	88
〈표 IV-4〉 통일된 제출기한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견해 차이 .....	91
〈표 IV-5〉 사회보험 정산 관련 신고서식 .....	97

## 그림 목차

[그림 II-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간 지급명세서 신고일정 .....	14
[그림 II-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18
[그림 II-3] 간이 지급명세서 .....	20
[그림 II-4] 연간 지급명세서 .....	22
[그림 II-5] 사회보험 자격취득 공통신고서 .....	31
[그림 II-6] 사회보험 자격상실 공통신고서 .....	32
[그림 II-7]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	33
[그림 II-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34
[그림 II-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일반사업장) .....	34
[그림 II-10]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조직구성 .....	43
[그림 III-1] 프랑스의 근로자 전용메뉴 원천징수관리 .....	62
[그림 III-2] 일본 마이너포털 API 구조 .....	79
[그림 IV-1]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 보완(안) .....	89
[그림 IV-2]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	92
[그림 IV-3]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상세내역 .....	93



# I. 서론

-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sup>1)</sup>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 및 사회보험의 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함
  - 조세의 신고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대표적임
  - 사회보험의 소득 관련 신고는 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사회보험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 또는 보수총액신고임
  
- 우리나라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와 사회보험 신고는 과세관청과 각 사회보험공단의 징수 행정 효율화에 일조하고 있음
  - 또한 약 2천만명의 근로소득자의 개인별 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요구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임
  - 조세와 사회보험은 신고의무, 신고서식, 제재사항이 다름
    - 동일한 소득자료에 대하여 다른 형식의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각 신고는 신고기한 또한 다름
    - 원천징수의무자의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등의 부담 대상이 됨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이 시행되기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1) 본 연구에서의 근로소득이란 상용근로자가 받는 상용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함

- 2019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고, 2026년부터 제출주기가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될 예정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신고의무와 이를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식을 살펴보면 중복 또는 유사한 항목이 존재함
- 조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그 신고내용은 다르나, 2026년부터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됨으로 인해 신고주기가 같아짐
  - 조세의 연간 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의 소득 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소득자료는 제출항목 중 주요한 공통사항임
    - 조세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개인별 소득세액을 정산하고 사회보험의 소득 또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개인별 사회보험료를 정산하거나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됨
    - 다만, 제출하는 소득금액은 신고서식별 상이함
- 본 보고서는 상용근로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현행 제도 내에서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고 있음
- 정훈·이미현·권정교·김치울(2022)은 임금정보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는 조세와 사회보험의 통합된 공통 신고서식(안)을 제시함<sup>2)</sup>
  - 이한우(2022)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서식을 변경·통합하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sup>3)</sup>
  - 이병희(2023)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집단의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조세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편 방향을 검토함<sup>4)</sup>

2) 정훈·이미현·권정교·김치울, 『조세-사회보험 사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11.

3) 이한우,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재(再)개정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계간 세무사』, 2022년 여름호, 2022.

- 본 보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납세협력 사항인 신고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다만, 본 연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조세와 사회보험의 제도 간 차이를 좁힐 방안에 대한 분석에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세무행정 연구의 특성상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보다 실질적인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집중함

---

4) 이병희,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 6.

## II.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란 증빙수수·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함<sup>5)</sup>
  
- 납세협력비용은 대부분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하는데, 신고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은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임
  -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는데,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정보제공의무가 약 83% 정도 비중을 차지함<sup>6)7)</sup>
    - 정보제공의무는 신고납부, 장부기장, 과세자료 제출 등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 등으로 발생하는 납세협력의무를 뜻함
    - 장부기장, 재무제표작성 등 불가피한 부분의 축소는 한계가 있으나, 서식 간소화,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 등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이행 가능한 부분임
  - 국세청은 2013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는데, 신고횟수의 축소는 영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효과적임이 확인됨
    -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가지 항목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

5) 국세청,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2009. 8. 2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2175>, 검색일자: 2023. 10. 24.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흐름: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재정포럼』 2009년 9월호 제159호, 2009. 9., p.146

7)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측정하고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단위행위별로 구분·표준화하여 계량모델로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함(국세청,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주기적 측정·공개,” 보도자료, 2008. 3. 27.)

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통해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확인함

-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세정서비스<sup>8)</sup>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sup>9)</sup>

○ 2023년 12월 1일 현재 제4차 납세협력비용은 측정 중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세-사회보험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기술함

○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신고의무, 제재사항, 신고서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신고의무'에서는 조세-사회보험의 신고서식별 신고 또는 제출, 정산, 수정에 관하여 기술함
- '제재사항'에서는 조세-사회보험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과태료 등에 관하여 기술함
- '신고서식'에서는 조세-사회보험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분석함

8)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사례임

9) 국세청,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 보도자료, 2014. 11. 1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816>, 검색일자: 2023. 10. 24.

## 1. 조세

### 가. 신고의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소득세 신고인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인 간이 지급명세서<sup>10)</sup> 및 연간 지급명세서<sup>11)</sup> 제출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함
  - 상용근로자란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 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함<sup>12)</sup>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인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소득은 '총지급액'으로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과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금액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근로소득이라 함
  - 총지급액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sup>213)</sup> 및 제2호의<sup>314)</sup>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10)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본 보고서에서는 '간이 지급명세서'로 표기함

1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간이 지급명세서와 구분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로 표기함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1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을 의미함

14)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을 의미함

II.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 7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난의 총지급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따라서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소득과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II-1〉 비과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구분	법조문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12 3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12 3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12 3 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12 3 자	소득령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소득령 §12 3(자가운전보조금)	×
		소득령 §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소득령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소득령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득령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소득령 §12 14 (취재수당)		○	
소득령 §12 15 (벽지수당)		○	
소득령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표 II-1〉 계속

구분	법조문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득령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령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12 3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12 3 하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12 3 거	소득령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득령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소득령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12 3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현물 급식	×
	소득세법 §12 3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12 3 어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12 3 저	사택 제공 이익	×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12 3 자	소득령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표 II-1〉 계속

구분	법조문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감면	조특법 §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 §18조의3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p.5

- 일정 시점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함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역시 법정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여야 함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함

- **(작성대상자)**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개인, 법인,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자는 대상소득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원천징수 납세지로 제출함<sup>15)</sup>

〈표 II-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납세지	작성대상자
개인	개인		주된 사업장(주소지) 소재지	개인
법인	일반법인	본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독립채산제 <sup>1)</sup> 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점
		(본점일괄납부신청) 해당 지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sup>3)</sup>	법인의 본점
사업자단위등록 <sup>2)</sup>	본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주: 1)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 단위마다 업무 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 관리체제를 독립채산제라 하며,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단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의미하며,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음

2)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함

3) 본점일괄납부의 경우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함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실무, 2020. 5., p.19

15) 「소득세법」 제7조

- **(신고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sup>16)</sup>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한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함<sup>17)</sup>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 20인 이하인 경우(금융 및 보험업 제외)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가 1월~6월까지지는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지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정산)**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짐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후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재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함
  -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함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sup>18)</sup>,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16) 「소득세법」 제128조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 2) 간이 지급명세서

- **(대상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총급여액'임<sup>19)</sup>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합계액은 아래와 같음
    -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소득을 의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 소득도 존재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인정상여'로 제출되고, 이 외 과세 소득은 '급여등'으로 제출됨
    -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고,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합계액에서 인정상여를 제외한 금액임
  
- **(작성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와 동일함
  
- **(신고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sup>20)</sup>
  - 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말까지임
  
- **(정산)**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짐

19)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1)] p.2

20)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 (수정)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후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재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함

3) 연간 지급명세서

- (대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총급여액’임<sup>21)</sup>
  -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합계한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일치해야 함

〈표 II-3〉 신고서식별 신고 및 제출 대상소득 비교

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지급액	간이 지급명세서의 급여등+ 인정상여	연간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
과세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sup>1)</sup>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
	직무발명보상금	○	○	○
비과세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	×	×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소득	×	×	×

주: 1)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인정상여’로 제출되고, 이 외 과세소득은 ‘급여등’으로 제출됨  
 2)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로 제출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p.2

□ **(작성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와 동일함<sup>22)</sup>

□ **(신고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sup>23)</sup>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서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림 II-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간 지급명세서 신고일정

1	2	3	4	5	6	7	~	12	1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1.10. 반기별 납부신고 (7~12월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7.10. 반기별 납부신고 (1~6월분)			1.10. 반기별 납부신고 (7~12월분)
연금소득 연말정산	2월말	3.10.		~5.31.	~6.30.	~7.31.		~12.31.	~1.3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배당· 기타·연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반기별납부 신청기간	반기별납부 승인통보		반기별납부 신청기간	반기별납부 승인통보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실무, 2020. 5., p.3

□ **(정산)**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짐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함

22) 「소득세법」 제164조

23) 상동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월 지급분과 연말정산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함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도 연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과 연말정산을 포함한 신고서)를 7월 10일까지 제출함
    - 환급신청 시 3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한급 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함
    - 환급세액이 많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원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수정)**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후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재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함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의 단순 착오 또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등

## 나. 제재사항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sup>24)</sup>를 지는 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가산세 중 일부는 100분의 10이 한도임)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sup>25)</sup>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함
  - 가산세는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임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2) 간이 지급명세서·연간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는 0.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sup>26)</sup>
  - 중소기업은 5천만원, 이 외의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간이 지급명세서 0.125%)를 가산세로 부담함

2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임

2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6)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다. 신고서식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신고서임<sup>27)</sup>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또는 반기) 지급한 소득별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세액 내역을 1장의 서식에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나타낸 집계표임
    - 근로자별 소득 내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별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신고서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항목에는 원천징수의 기본사항, 원천징수 대상소득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음
    - 기본사항은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임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부분은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명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세로축의 소득구분과 코드, 가로축의 소득지급 및 징수세액으로 구분됨
    - 소득세 등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입함
    - 환급세액 조정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조정 내역을 기입함

---

2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그림 II-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3. 18.> [시행일: 2023. 1. 1.]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대입,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⑤ 당월 조정 환급세액	⑥ 소득세 등 (기분세 포함)	⑦ 납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⑨ 납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납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주, 비주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종근로	A03												
		합계	A04												
		분납신청 납부금액	A05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합계													
	사업소득	매출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연금계좌	A41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A43												
		매출징수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그 외	A42												
	배당소득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법인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액 등	A69													
	비대우주 인도소득	A7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⑰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 환 급세액 (⑲-⑳)		㉑ 환급 신청액		
⑭ 전월 미환급세액	⑮ 기환급 신청세액	⑯ 차감잔액 (⑮-⑭)	⑰ 일반 환급	⑱ 선택대상 (금융 회사 등)	㉒ 그 밖의 환급 금용 회사 등	㉓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부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부(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세무서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 간이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별 근로소득의 내역을 반기별로 제출하는 신고서임
-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을 위해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가 신설됨
- 간이 지급명세서 항목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등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임
  -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내용에는 귀속연도, 지급시기, 근로자 총인원, 과세소득 등임
  - 소득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여부, 거주자 구분이 있음
  - 소득자의 근로소득 내용은 근무기간, 지급월, 급여 등, 인정상여로 급여 등과 인정상여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기입함

[그림 II-3] 간이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개정 2021. 5. 17.>		(3쪽 중 제1쪽)				
<b>간이 지급명세서</b>						
<b>(근로소득)</b>						
<b>(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b>						
<b>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b>						
원천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지급 내용	⑧ 귀속연도	년	⑨ 지급 시기 [ ] 상반기(1월~6월) [ ] 하반기(7월~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명	⑪ 과세소득 (⑫번 합계 + ⑬번 합계)			
<b>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b>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⑮ 근무 기간	⑯ 지급월	⑰ 급여 등	⑱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1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2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p>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x-small;">※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297mm(백상지 80g/㎡)</p>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1)]

### 3) 연간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 소득세 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신고서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는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함
  - 지급명세서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세액명세 등의 항목을 작성해야 함<sup>28)</sup>
    - 지급명세서 첨부서류 중 2쪽의 정산명세를 참고해서 총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후,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세액공제(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명세서(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등)를 같이 제출해야 함

---

2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

[그림 II-4] 연간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2. 3. 18.>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거주구분</td> <td>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역</td> <td>거주지역코드</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외국인9</td> </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여 1 / 부 2</td> </tr> <tr> <td>외국인소득 피연근로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1, 종도회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득 피연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종도회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득 피연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종도회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 1 / 부 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 (주소)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③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ரி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공백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⑮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⑯ 국외근로	MOX																						
		⑯-1 야간근로수당	OOX																						
⑯-2 출산·보육수당		QOX																							
⑯-4 연구보조비		HOX																							
⑯-5																									
⑯-6																									
~																									
⑯-37																									
⑯ 수련보조수당		Y22																							
⑰ 비과세소득 계																									
⑱-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⑳ 소득세		㉑ 지방소득세	㉒ 농어촌특별세																				
	㉓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㉔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감징수세액 (㉓-㉔-㉕-㉖)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

## 2. 사회보험

### 가. 신고의무

-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함), 고용보험,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  
회보험 신고의무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II장 1. 조세 부분에서 다른 「소득세법」상 상용근  
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sup>29)</sup>가 이행해야 할 사회보험 신고의무에 대해  
조사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대해 '사회보험 자격취득 또는  
상실 공통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정산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소득  
총액신고서',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고용·산재보험의 '고용·산  
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외의 신고서식으로는 신고내용의 수정을 위해 '사회보험 내용변경 통합서  
식', 소득변경을 위해 '사회보험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휴직 시 보험  
료 유예 등을 위해 '납부예외신청서' 등이 있음

#### 1) 사회보험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입·퇴사에 대해 사회보험 자격취득 및 상  
실을 신고해야 함
- 공통서식을 통해 통합하여 신고하거나 보험별로 신고할 수 있음

29) 조세의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행하는 사회보험의 신고의무로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하 사회보험의 사업주, 사업장 등을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함

- 가입대상자는 사회보험별로 상이함
  -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대상임<sup>30)</sup>
  - 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함<sup>31)</sup>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고 일부 사업에서는 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격취득에 대해 사회보험별 상이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자격취득)**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격의 득실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sup>32)</sup>
  - **(자격상실)** 자격상실의 시기는 각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날을 원칙으로 함
    - 국민연금의 경우 60세(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되어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등도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함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퇴직 등 고용관계 종료, 국적상실, 근로자의 사망 등이 있음<sup>33)</sup>
    - 사업의 폐업·종료 등의 경우 자격상실신고와 더불어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sup>34)</sup>

30) 「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3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32)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33)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2항

-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또는 월평균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 부과함
  - 사회보험공단은 매월 15일에 신고를 마감하여 보험료를 각 사업장에 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부득이하게 납부가 불가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사업의 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외할 수 있음
  
- 사회보험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은 상이함
  -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비과세소득 항목 중 아래 표의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에 포함됨<sup>35)</sup>

〈표 II-4〉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중 건강보험 부과대상 항목

구분	비과세항목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소득령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소득령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소득령 §16①2(국외근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

-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을 위해 전년도 지급한 소득총액과 근무일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sup>36)</sup>

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3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총액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함

〈표 11-5〉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대상 유형표

구분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cmsId=news&seq=27735&viewFlag=true](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cmsId=news&seq=27735&viewFlag=true), 검색일자: 2023. 12. 26.

-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의 총액)과 근무 기간 등을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sup>37)</sup>
  - 통보서에 기재되는 근로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한 재직자임
    - 퇴직자의 경우 상실 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을 위해 기재함
  - 우편, 팩스, 유선, 공단 방문 및 건강보험 EDI로 신고할 수 있음
  - 보수총액통보서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보험료의 정산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함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고용·산재보험보수 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sup>38)</sup>

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에 필요한 전년도 월평균보수와 지급한 보수총액, 취득일, 전보일 등을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함
  - 퇴직자는 제외함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sup>39)</sup>
  - 전년도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후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 등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오류를 정정해야 함
  -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보수총액 미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sup>40)</sup>

### 3) 이 외의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정정)신고 공통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함<sup>41)</sup>
  - 변경신고 사유로는 근로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④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⑤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등의 사유가 있음
- 근로자의 신고된 소득월액(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함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8항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sup>42)</sup>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변경 신청할 수 있음<sup>43)</sup>
  - 건강보험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해야 함<sup>44)</sup>
  -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함<sup>45)</sup>
-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별로 납부 예외·유예·면제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국민연금은 해당기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음<sup>46)47)</sup>
  - 건강보험은 휴직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유예제도'를 두고 있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sup>48)49)</sup>
  - 고용·산재보험은 휴직하는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월별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제외됨<sup>50)51)</sup>

4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2381&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infSeq=6421>, 검색일자: 2023. 12. 1.

4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45)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p.52

46)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47) 국민연금공단, 2022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실무안내, p.20

48)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5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51)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p.32

〈표 II-6〉 휴직 관련 사회보험료 특례 비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여부	× <sup>1)</sup>	○ <sup>2)</sup>	× <sup>3)</sup>

주: 1) 휴직기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음  
 2)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고지유예제도”를 두고 있고, 휴직이 종료되고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보험료를 부과함  
 3)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월별보험료 산정 시 제외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나. 제재사항

- 사회보험별 과태료 등의 기준이 상이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득실 및 소득월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차 위반은 17만원, 2차 위반은 33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sup>52)</sup>
  - 건강보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신고와 서류의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sup>53)</sup>
  -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신고의무자가 피보험자의 취득·변경(정정)·상실 등의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함<sup>54)</sup>
    - 과태료 금액은 합산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없음<sup>55)56)</sup>
    -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시 1, 2, 3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임

52)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53) 「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2호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56)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거짓으로 보험관계의 변경, 보수총액,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3차  
이상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임

〈표 II-7〉 사회보험별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미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고용보험(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다. 신고서식

### 1) 자격취득 신고서

-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인적사항, 월평균 기준 소득월액(보수월액)과 자격취득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입하고, 보험별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II-5] 사회보험 자격취득 공통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풀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비고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 평균보수액) (원)	자격취득일 (YYYY. MM. 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직종	주 소근로시간 (계정단작성)	계월연월 (계정단작성)
1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글지(80g/m<sup>2</sup>)|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쪽

## 2) 자격상실 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등을 기입하고, 보험별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11-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집수번호		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단위사업장명			회계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일자

① 월련 번호	② 건강보험종 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⑤ 자격 취득일 (변동일) 년 월 일 YYYYMMDD	⑥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	⑦ 전년도 보수 총액	⑧ 근무 개월 수
1							
2							
3							
4							
5							
6							
7							
8							
9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통보를 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그림 11-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일반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2022 )년도 보수총액신고서(일반 사업장)**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포털서비스(total.com.net.or.kr) 또는 전자해제(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집수번호	집수일자	작성일자	전화	처리기간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청: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생산품( ):	

연번	성명	주관(외국인) 등록번호	④보험료 부과구분	⑤-1 산재보험			⑤-2 고용보험			
				취득일 (연월일)	전보일 (연월일)	⑥연간보수총액(원)	종사지 코드	취득일 (연월일)	전보일 (연월일)	⑦연간보수총액(원) (1월~6월)
1			Y( )							
2			Y( )							
3			Y( )							
4			Y( )							
5			Y( )							
6			Y( )							
7			Y( )							
8			Y( )							
9			Y( )							
합 계										

④ ( )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 (해당시 √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필수사항)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1월~6월	⑥ 고용보험	7월~12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보통근로자 제외)	⑧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 (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분 (아래 4표시)	변경 전	변경 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기간	기간	기간

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⑩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년납충당(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의4(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통보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충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 서식]

### 3. 조세-사회보험 통합현황

#### 가.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비교

##### 1) 신고서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관련 과세관청 및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과세관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근로소득 총지급액과 인원수를 제출하고 간이 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자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함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
    - 총지급액과 인원수, 원천징수세액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해야 함
  - **(사회보험공단)** 사용자는 자격취득 대상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 취득신고 공통서식을 작성해서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하고<sup>57)</sup> 보험료 정산을 위해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 등을 제출함
    - 자격취득신고 1회로 보험료가 부과됨
    -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 적격 변경(정정)신고 공통서식을 작성해서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 함<sup>58)</sup>
  
- 근로자의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조세는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소득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

57)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표 II-8〉 소득변동 시 신고의무

구분	조세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의무	×	× <sup>1)</sup>	△ <sup>2)</sup>	× <sup>3)</sup>	× <sup>3)</sup>

주: 1)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20%) 이상 변동된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적용사항은 아님

2)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변경신고가 의무화됨

3)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시점 퇴직정산으로 정산함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조세는 신고의무가 없고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별로 납부 예외·유예·면제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연말정산인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 또는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따라서 조세와 사회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정보제출 의무는 '신고'와 '정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신고'의 경우 조세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 월별 총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사회보험의 취득·상실 공통서식은 사회보험별 취득·상실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담고 있음

○ '정산'의 경우 조세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 소득세 정산서류로 정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담고 있어 복잡하지만, 사회보험의 보수 또는 소득총액신고서는 근로자 개인별 소득총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급명세서보다 단순함

〈표 II-9〉 근로소득 관련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서식

구분	조세	사회보험
신고·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li>• 간이 지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 자격취득 공통신고서</li> <li>• 사회보험 자격상실 공통신고서</li> </ul>
수정	-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 내용변경 통합서식 등</li> </ul>
소득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등</li> </ul>
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재개)신청서</li> <li>•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 (해지신청서)</li> <li>•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등</li> </ul>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지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li> <li>•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li> <li>•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li> </ul>

주: 1) 총지급액, 인원수, 원천징수세액 등이 변경되면, 기재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수정 신고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서식 신고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 신고기한은 신고서식별로 다름
- 조세는 지급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급시점 이후에 신고시기가 도래하지만, 사회보험은 전년도 보수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 등이 중요하므로 지급에 관계없이 신고시기가 도래함

〈표 II-10〉 근로소득 관련 조세·사회보험 신고기한

조세			사회보험					
원천세	간이 지급 명세서	(연간) 지급 명세서	취득 (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국민	건강	고용·산재	국민	건강	고용·산재
다음달 10일	반기의 다음달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달 15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다음달 15일	매년 5월 31일	매년 3월 10일	매년 3월 15일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2) 제재사항

- 조세와 사회보험의 공통으로 발생하는 의무인 ‘신고’와 ‘정산’에 대한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 **(조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와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음
    -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음
    - 소득자료 관련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있음
  - **(사회보험)** 사회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함
    - ‘신고’ 관련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임
    - 또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로는 사회보험별 연체율이 다름
    - ‘정산’ 관련 과태료는 국민연금은 300만원, 건강보험은 100만원 이하,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이지만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sup>59)</sup>

---

59) 세정일보, 강병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년에 두 번을 한 번으로, 행정낭비 사라질 것,” 2021. 10. 15.,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47> 참조, 검색일자: 2023. 12. 1.

〈표 II-11〉 근로소득 관련 신고의무 불성실 제재사항

조세			사회보험		
종류	부과기준	가산세	종류	부과기준	과태료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3%부터 시작	• 사회보험료 연체금	• 체납보험료	• 사회 보험별 연체율이 다름
			• 사회보험 취득·상실 불성실	• 무신고(제출) 또는 거짓신고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 간이 지급 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한 지급금액	• 1% (간이 0.25%)	• 사회보험 보수총액신고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	• 무신고(제출) 또는 거짓신고 (제출)	• 국민연금 3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100만원 이하 • 고용산재보험 300만원 이하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함

## 나. 우리나라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 1) 제도의 현황

□ 실시간 소득파악(RTI)은 복지행정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자료를 매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함<sup>60)</sup>

60) 국세청 보도자료,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2022. 10. 1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08362&mi=>, 검색일자: 2023. 10. 30.

- 현행 실시간 소득과약은 ① 건설직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 ②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③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대상으로 함
  - ③의 용역제공자는 인적용역사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소포배달용역, 대리운전용역, 수하물운반원, 간병용역, 파출용역, 중고자동차판매원, 육실종사원 등 8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sup>61)</sup>
-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강화됨<sup>62)</sup>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기별에서 매월로 제출주기가 단축됨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으므로,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소득자료인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함<sup>63)</sup>
- 제출주기 단축으로 수집된 소득자료는 2021년 3월 11일 출범한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sup>64)</sup>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힘
  -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
- 기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소득과약 관련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함

61) 「소득세법」 제17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62) 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7&cntntsId=238923>, 검색일자: 2023. 10. 30.

63)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8&cntntsId=238924>, 검색일자: 2023. 10. 30.

64) 국세청 보도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2021. 3. 11.

-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서비스에는 소득자료 제출, 수집대상자 본인의 소득내역 확인, 근로부인 신청 및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등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파악 수집대상자의 소득을 모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수집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을 ‘복지이음 포털·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수집대상자는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2022년 국세청 직제개편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폐단하고 기능은 소득지원국으로 이관됨<sup>65)</sup>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으로 2024년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운영 1년을 앞두고 폐단됨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2026년부터 단축될 예정임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해서 단축해왔음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sup>66)</sup>
    - 기획재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

6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직제개편] ‘실시간 소득파악’ 준비단 폐단…기능은 소득지원국 이관, 2022. 12. 16.,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6905>, 검색일자: 2023. 10. 30.

6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 11. 30. 참조

〈표 II-12〉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시행시기 유예

현행(정부안 없음)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sup>1)</sup> 제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매월('24년 시행)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 <input type="checkbox"/> 지연제출 가산세 등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매월('26년 시행)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

주: 1)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 11. 30., p.8

-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출주기 단축으로 과세관청 및 사회보험공단 양 기관의 소득자료 공유는 쉽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은 늘어남
  - 연간 2회에서 연간 12회로 제출하면 제출주기가 6배 늘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됨
  - 이에 기획재정부는 간이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낮춰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함<sup>67)68)</sup>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1%보다 낮은 0.25%를 적용
    - 지연제출(1개월 내 제출)에 대해 0.125% 적용
    - 간이 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 면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년간 면제)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67)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2022. 7. 21.),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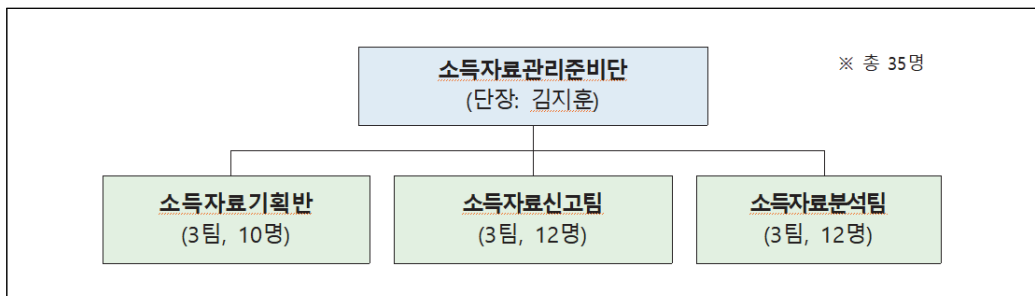
6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 11. 30., p.8

## 2) 제도의 한계

### 가) 관리조직의 부재

- 실시간 소득과약(RTI)을 집행하는 조직이 존재하기는 하나, 조세와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중심 조직은 없는 실정임
  - 2022년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폐단 후 국세청 소득지원국(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편입되어 그 규모와 기능이 축소됨
  -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은 해산하였고, 고용노동부 산하 추진단 또한 소규모 조직으로 축소됨
  
- 폐단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의 1반 2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음
  - 소득자료기획반은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함
  - 소득자료신고팀은 소득자료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함
  - 소득자료분석팀은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함

[그림 II-10]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조직구성



자료: 2021. 3. 11.자 국세청 보도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p.3 참조

- 조세 및 사회보험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고 사회보험공단은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임
-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시스템의 부재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부 공통된 항목에 대해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서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
  - 조세의 간이 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 공통신고
  - 조세의 연간 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의 보수총액 또는 소득총액 신고

#### 나) 한정된 수집대상자

- 국세청은 매월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에 제공함
  - 실시간 소득파악의 목적은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함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해 우선 시행함
    - 수집대상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로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
  - 이 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수집대상이 아님
-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국세청이 비정형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으로 매월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원천징수의무자는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함
-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2026년으로 2년 유예됨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은 근로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에 필수적임

### Ⅲ. 해외사례

- 해외사례는 조세와 사회보험을 과세관청에서 통합하여 징수하는 국가와 분리하여 징수하지만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과세관청이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하여 조사함
- 조세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국가인 영국, 스웨덴은 일원화된 통합서식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과세관청이 징수함
- 조세와 사회보험을 분리하여 징수하는 프랑스, 덴마크, 일본은 조세와 사회보험을 분리 징수하지만, 과세관청이 소득세 또는 보험료·기여금 등의 징수업무를 지원함

#### 1. 통합형 국가

##### 가. 영국

- 영국은 과세관청인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의 징수업무를 담당함<sup>69)</sup>
- 영국은 2013년 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도입함
- 영국의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근로자의 세무정보(급여, 고용관계 등)를 토대로 이루어짐

---

69) GOV.UK, "Real Time Informati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Pay As You Ear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al-time-information-improving-the-operation-of-pay-as-you-earn>, 검색일자: 2023. 12. 5.

- 영국은 사회보험<sup>70)</sup>에 대해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로 일괄 부과함<sup>71)</sup>
  - 이는 개별 사회보험 간 의무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대상소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함
    - 근로자(Class 1)의 NIC 산정 시 근로소득만을 대상소득으로 하므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사회보험기관이 아닌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것임
  - 영국의 국민보험료는 예산보고서상 조세수입으로 집계되고, 이는 조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1)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출의무

- **(신고·제출)**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과세관청이 인증한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FPS(Full Payment Summary)와 필요한 경우 EPS(Employer Payment Summary)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함<sup>72)</sup>
    -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정보 기록,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등 원천징수세액 계산, 급여명세서 작성 등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는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의 경우 과세관청이 인증한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 FPS를 제출해야 함<sup>73)</sup>
    - 급여 정규지급일에 FPS를 작성하여 보고함
    - FPS를 전송 후 다음 달 10일부터 납부할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FPS를 통하여 근로자 정보를 보고함<sup>74)</sup>

70) 신국가연금, 구직수당, 고용 및 지원수당, 모성수당, 유족지원급여 등으로 구성됨

71) 김혜진·문현경, 「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논의와 향후 과제」, 『사회복지정책』, 2022. 6., pp. 144~145

72) HMRC, Find payroll software, <https://www.gov.uk/payroll-software/free-software>, 검색일자: 2023. 12. 5.

73) HMRC, Running payroll-Reporting to HMRC: F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reporting-to-hmrc>, 검색일자: 2023. 12. 5.

-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EPS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회보장과 관련한 내용임<sup>75)</sup>
  - 과세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
  - 산휴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함
  - 건설산업제도(CIS)에 따른 공제를 받음
  - 고용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청구하거나 철회함
  - 수습세(apprenticeship levy)를 지급함
  
-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과세대상 달의 다음 달 22일까지 납부해야 함<sup>76)</sup>
  - 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분기의 다음 달 22일까지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이 월평균 1,500파운드 미만인 경우 분기별 신고가 가능함
  - 납부방식은 소프트웨어, 폰뱅킹, 계좌이체, 법인카드 등이 있음
  
- **(수정)** 급여 또는 공제액, 지급일자, 입·퇴사일, 근로자 인적사항, EPS 금액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수정사항에 따라 수정방식은 다름
    - **(급여 또는 공제액)** 다음 달 신고서식에서 연간 누계수치로 조정함<sup>77)</sup>
    - **(지급일자)** 지연신고 사유란에 이전제출 정정으로 기재하여 추가 FPS를 제출함
    - **(입·퇴사일)** 올바른 날짜로 업데이트하면 됨
    - **(근로자 인적사항)** 올바른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됨
    - **(EPS 금액)** 연간 누계수치가 포함된 EPS를 제출함

74) HMRC, Tell HMRC about a new employee, <https://www.gov.uk/new-employee?step-by-step-nav=47bcd4c-9df9-48ff-b1ad-2381-ca819464>, 검색일자: 2023. 12. 5.

75) HMRC, Running payroll-Reporting to HMRC: E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reporting-to-hmrc-eps>, 검색일자: 2023. 12. 5.

76) HMRC, Pay employers' PAYE, <https://www.gov.uk/pay-payee-tax>, 검색일자: 2023. 12. 5.

77) 과세연도가 종료된 최종 원천징수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FPS를 추가로 제출하고 기재출한 내용과 수정제출할 내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EYU를 제출해야 함

- FPS 또는 EPS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고의로 한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함
- **(정산)** RTI 도입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의무는 없으나<sup>78)</sup> 과세연도 종료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최종 원천징수신고서(final payroll report)를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명세서(P60)를 교부해야 함<sup>79)</sup>
  - 과세연도는 매년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로 종료 시 제출되는 최종 원천징수신고서는 별도 신고가 아닌 FPS의 최종 형태임
  - 과세관청은 과세연도 말 이후 해당 종업원에게 정확한 세액이 계산된 세액고지서(P800)를 발송하여 환급청구 또는 추가납부를 가능하게 함<sup>80)</sup>
    - RTI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소득정보가 실시간 보고되어 근로자별 소득세 정산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나 근로자의 고용관계 변화 등으로 세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2) 제재사항

- **(미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FPS와 EPS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가산세(penalty)가 부과됨<sup>81)</sup>
  -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자의 수가 1~9인 경우 100파운드, 10~49인 경우 200파운드, 50~249인 경우 300파운드, 250인 이상인 경우 400파운드임
  - 각 과세연도 한 번의 지연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함

78) HMRC, Issue briefing: Real Time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ernising-pay-real-time-information>, 검색일자: 2023. 12. 5.

79) HMRC, Payroll: annual reporting and tasks,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send-your-final-payroll-report>, 검색일자: 2023. 12. 5.

80) HMRC, Tax overpayments and underpayments, <https://www.gov.uk/tax-overpayments-and-underpayments>, 검색일자: 2023. 12. 5.

81) HMRC, "What happens if you do not report payroll information on tim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report-payroll-information-on-time>, 검색일자: 2023. 12. 5.

- **(미납)**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납부불가산세와 이자를 동시에 부과함<sup>82)</sup>
  - 납부불가산세는 지연된 횟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결정됨
    - 납부불이 처음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납부불 횟수가 1~3인 경우 1%, 4~6인 경우 2%, 7~9인 경우 3%, 10 이상인 경우 4%임
  - 이자율은 기본금리(Bank of England base rate)에 2.5%를 가산한 세율이고 이자는 날짜로 계산함
  
- **(과소신고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정확한 정보(inaccuracy)에 대한 가산세(penalty)는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인 잠재적 결손 세입(potential loss revenue)의 일부로 부과함<sup>83)</sup>
  - 부주의(careless)인 경우 최대 30%, 고의적(deliberate)인 경우 20%에서 최대 70%, 고의적이고 은닉(deliberate and concealed)하고자 한 경우 30%에서 최대 100%로 부과함
  - 다만 올바른 세액 신고를 위해 상당한 주의(resonable care)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경감 또는 부과하지 않음
    -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징수에 협조적인 경우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낮춰줌

---

82) HMRC, "Late payment penalties for PAYE and National Insuranc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pay-payee-and-national-insurance-on-time>, 검색일자: 2023. 12. 5.

83) HMRC, "Compliance checks for penalties of inaccuracies in returns or documents (CC/FS7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penalties-for-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 검색일자: 2023. 12. 5.

### 3) 신고절차<sup>84)</sup>

- 고용주는 PAYE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Companies House<sup>85)</sup>에 ‘회사’를 등록해야 함
  - PAYE는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 시스템임
  
- 고용주는 근로자별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과세관청은 동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별 납세코드를 부여함<sup>86)</sup>
  - 납세코드(tax code)는 소득에서 공제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
    - 근로자에게 부여된 납세코드를 급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연중 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이 계산됨
    - 과세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근로자의 납세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함
    - 가장 일반적인 납세코드는 1257L로, 직업이 한 개이며 비과세소득, 미납세금, 과세 혜택이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임
    - 근로자는 HMRC 온라인<sup>87)</sup> 및 앱, 급여명세서 등에서 개인 본인의 납세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납세코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함
    -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자 등 온라인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의 경우 간이세액표 (Taxable Pay Tables)에 따른 원천징수를 허용함
  
-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FPS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9일까지 EPS를 제출해야 함
  - FPS는 주기(주 단위, 격주 단위, 4주 단위, 월 단위로 설정)별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신고서식임

84)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2-23, 2022. 11., pp.438~442

85) MINT Formations, Hassle-Free Companies House Registration, <https://www.mintformations.co.uk/companies-house-registration/>, 검색일자: 2023. 12. 18.

86) HMRC, Tax codes, <https://www.gov.uk/tax-codes>, 검색일자: 2023. 12. 18.

87) HMRC, Check your Income Tax for the current year, <https://www.gov.uk/check-income-tax-current-year>, 검색일자: 2023. 12. 18.

- FPS에 포함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과세연도, 입·퇴사일, 근로자 인적사항(주소 등), 근로자 급여정보(급여일, 제출 당시까지 총급여 및 총 세금, 납세코드, 공제내역 등), 근로자 국민보험료, 근로자 주소변경내역, 학자금 대출내역 등
  - 근로자 주소의 경우 변경내역을 관리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 거주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고용주는 과세연도 마지막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final payroll report)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이 아닌 FPS의 최종 보고를 의미함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관련 신고서식인 P11D를 다음연도 7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함
  - 영국의 경우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항목별 또는 사례별로 비과세, 소득세 또는 국민보험료 과세 여부 등이 상이함<sup>88)</sup>
    -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사례(업무 보안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는 P11D의 보고의무가 없음
    - 국민보험료만 과세하는 사례, 소득세만 과세하는 사례 등 항목별로 다양하게 존재함
  
- 영국은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PAYE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적정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원천징수된 소득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6월에서 11월 사이 P800(a tax calculation letter)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발송함

---

88) HMRC, Expenses and benefits: A to Z,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a-to-z>, 검색일자: 2023. 12. 18.

〈표 III-1〉 영국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표

구분	4월 6일~	5월	6월 ~ 4월 5일
원천징수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PS 보고<sup>1)</sup> 후 익월 22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sup>2)</sup></li> <li>• EPS 보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9일까지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6일부터 근로자 납세코드 등 업데이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31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P60)<sup>3)</sup>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11D<sup>4)</sup>는 7월 6일까지 제출</li> <li>• 과세연도 마지막 급여일(4. 5. 종료) 또는 그 이전에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final payroll report)' 제출</li> </ul>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 P60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단,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li> <li>• 전년도 소득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6월~11월 사이 P800(a tax calculation letter)을 소득자에게 발송</li> </ul>		

주: 1)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6일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FPS를 실시간 제출하면 됨

2) 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납부 가능

3)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P60을 교부

4)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관련 신고서식으로 복리후생 항목별로 비과세, 소득세 또는 국민보험료 과세 여부 등이 상이함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스웨덴

□ 스웨덴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음<sup>89)90)</sup>

○ 2019년 이후 고용주는 매월 근로자별 원천징수신고서를 신고해야 함

○ 스웨덴은 1970~80년대에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사회보험위원회(Försäkringskassan)에서 과세관청으로 이관되었음

89) 스웨덴 국세청, "Kopplingen till socialförsäkringen,"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0.11/1313.html>, 검색일자: 2023. 12. 6.

90) 최인혁·정훈,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2021 국세행정포럼』,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 p.117

- 징수업무 이관 당시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과세관청이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됨

□ 스웨덴은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금을 부과함

-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모든 유형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퇴직연금 기여금을 부담함
  - 스웨덴의 사회보험에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부모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있음
- 기여금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됨
- 스웨덴의 사회보험 기여금은 사회보험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의 기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1)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출의무

□ (신고·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자별 원천징수(PAYE)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91)</sup>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에 고용주 등록을 하고 신고서 제출 등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함
  - 고용주는 F-skatt 승인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함<sup>92)</sup>
  - 고용주 등록은 고용주 웹사이트(verksamst.se)<sup>93)</sup>를 통하거나 SKV 4620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로 신청할 수 있음

91) 스웨덴 국세청, "Submit PAYE tax return,"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businessesandemployers/startingandrunningaswedishbusiness/declaringtaxesbusinesses/submitpayetaxreturn.4.2cf1b5cd163796a5c8b107cd.html>, 검색일자: 2023. 12. 6.

92) 스웨덴 국세청, Godkännande för F-skat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drivaforetag/startaochregistrera/fochfaskatt.4.58d555751259e4d661680006355.html?q=f-skatt>, 검색일자: 2023. 12. 6.

93) verksamst.se는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임

- 고용주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첫 급여 지급일, 연간 급여 지급 개월 수, 연간 예상 고용인원, 연간 예상 급여 지급액 등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 근로자의 A-skatt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함<sup>94)</sup>
    - 근로자는 원천징수 계산 시 필요한 세액표나 스웨덴 국세청의 특별 결정 여부를 보여주는 A-세금증명서(A-skattsedel)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함
  - 고용주가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 수령인의 주된 소득인 경우 일반세액표 또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른 예정세액을 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기여금 등도 함께 원천징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거주 지역,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일반 세액표에 따라 예비 공제되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등의 경우 일시급에 대한 세액표에 따라 예비 공제됨
  -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 달 12일까지 국세청 전자계정을 통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신고서에는 각 근로자에 대한 정보(개인 식별번호, 명세서 번호,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을 시 사업장 번호 등), 세금공제액, 기준 보수액, 공제 가능 경비, 사회보장기여금 공제액 등의 정보가 포함됨
    - 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해야 함
    - 연간 매출액이 4천만 SEK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2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4천만 SEK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6일까지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월별로 제출기한이 다름
- **(납부)**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2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함
-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카드 등이 있음

94) verksamt.se, Skatteavdrag vid utbetalning av lön, <https://www.verksamt.se/driva/anstalla/vad-kostar-det-att-ha-anstallda-/skatteavdrag>, 검색일자: 2023. 12. 6.

- **(수정)** 기재출된 원천징수 신고서상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회계기간에 대해 수정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sup>95)</sup>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는 정정할 수 없음
  - 신고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다음 달 신고서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정산)** 일반적으로 잔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클 경우 조정 신청을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정할 수 있음<sup>96)</sup>
  - 이는 원천징수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능한 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전자식별을 사용하는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skatt를 변경하는 SKV 4302 양식을 작성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조정 결정이 다음연도 1월부터 적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늦어도 직전 연도 11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함
  - 국세청은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에 대하여 고용주 또는 소득 지급인은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 새롭게 적용된 세율은 2주 후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지급부터 적용됨

## 2) 제재사항

- **(미제출)** 원천징수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연체료 625 SEK를 부과함<sup>97)</sup>
  - 해당 월의 근로소득 지급액이 없더라도 고용주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95) 스웨덴 국세청, Rätta en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ochorganisationer/arbetsgivare/arbetsgivaravgifterochskatteavdrag/betalaarbetsgivaravgifterochskatt.4.361dc8c15312eff6fd13d2d.html>, 검색일자: 2023.12. 6.

96) 스웨덴 국세청, Jämkning - betala rätt skatt från början, <https://www.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oechoinkomst/jamkning.4.71004e4c133e23bf6db8000110771.html>, 검색일자: 2023. 12. 6.

97) 스웨덴 국세청, När ska jag lämna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arbetsgivare/lamnaarbetsgivardeklaration/narskajaglamnaarbetsgivardeklaration.4.361dc8c15312eff6fd13c11.html>, 검색일자: 2023. 12. 5.

- **(미납)**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해 높은 가산금(Hög ränta)을 부과함<sup>98)</sup>
  -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로 일할 계산됨<sup>99)</sup>
    - 세금계좌의 비용이자(계좌잔액의 적자를 의미함)에 대한 기본가산금은 2023년 8월 1일부터 5%로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기본이자율에 15%를 가산함
    - 체납이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과소신고 등)** 과소신고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2. 분리형 국가(징수업무 지원)

### 가. 프랑스

-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기여금을 원천징수함
  -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함
  - 프랑스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와 사회보험료징수공단(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에서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징수함<sup>100)</sup>

98) 스웨덴 국세청, "Late payment penalties for PAYE and National Insuranc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pay-payee-and-national-insurance-on-time>, 검색일자: 2023. 12. 5.

99) 스웨덴 국세청, Räkna på skattekonto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skatteochavdrag/skattekontobetalaochfatillbaka/ranta.106.233f91f71260075abe8800010888.html>, 검색일자: 2023. 12. 5.

100) 이수연·엄혜연·류재현·이현지,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제4권 프랑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2. 12., pp.52~53

- **(ACOSS)**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 부분의 모든 보험료와 사회보장분담금(CSG) 등 사회보장 관련 조세까지 총괄 징수함
- **(URSSAF)**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분담금을 근로소득에서 원천 공제하여 징수하고 URSSAF 지사에 보험료와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URSSAF는 지역별 사회보험료와 분담금을 징수하는 공적 독립법인으로 지사에서 징수한 사회보험료와 분담금을 ACOSS로 이전함

### 1)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출의무

- **(신고·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해 매월 ‘사회보장명세서(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를 제출해야 함<sup>101)102)</sup>
  - 사용자는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하거나<sup>103)</sup> ‘사회보장신고 현대화(GIP-MDS)’가 운영하는 ‘Net-entreprises.fr’에 신고함<sup>104)</sup>
    - Net-entreprises.fr은 사회보장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임
    -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은 확인되지 않음
  - DSN은 근로자의 급여정보와 근무 관련 변동사항(휴직, 질병, 출산, 계약종료 등)이 포함된 온라인명세서임
    - DSN은 온라인 제출이므로 호환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 급여명세서 소프트웨어 사용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엄격한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명세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쉬워 보임
  - 직원 50인 미만 회사는 매월 15일, 50인 이상인 회사는 매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직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함

101) RÉPUBLIQUE FRANÇAISE, “Nominative Social Declaration (DSN),”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4059?lang=en>, 검색일자: 2023. 11. 27.

102) impots.gouv.fr., “HOW THE WITHHOLDING TAX WORKS,” <https://www.impots.gouv.fr/how-withholding-tax-works-0>, 검색일자: 2023. 11. 27.

103)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87-0A조

104)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131-1조

- 직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은 업무의 중단(질병, 출산 등), 업무의 조기 재개(업무 중단 종료일 이전 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계약해지(퇴직 등)로 매월 제출하는 서식과 다른 별도의 서식이 존재함
-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관청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함<sup>105)</sup>
- 은행 계좌는 SEPA(단일 유로 결제 지역) B2B 계좌 형식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impots.gouv.fr](https://impots.gouv.fr)에 등록된 은행계좌를 DSN 신고 시 기재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동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신청, Tese 또는 Cea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함
    - 이 외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지켰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납부기한은 DSN 신고 시기와 동일하게 매월 5일 또는 15일,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분기별임<sup>106)</sup>
- **(수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세금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권리(LE DROIT À L'ERREUR EN MATIÈRE FISCALE)'를 행사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sup>107)</sup>
- 납부세액과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것은 아님
- **(정산)** 프랑스는 연말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의무는 없음
- 근로자는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신고서(Formulaire 204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sup>108)</sup>

105) [impots.gouv.fr., "HOW THE WITHHOLDING TAX WORKS,"](https://impots.gouv.fr/how-withholding-tax-works-0) <https://www.impots.gouv.fr/how-withholding-tax-works-0>, 검색일자: 2023. 11. 27.

106) URSSAF, "Quand?"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declarer-et-payer/quand.html>, 검색일자: 2023. 11. 8.

107) [impots.gouv.fr., "LE DROIT À L'ERREUR EN MATIÈRE FISCALE,"](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droit-lerreur-en-matiere-fiscale)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droit-lerreur-en-matiere-fiscale>, 검색일자: 2023. 11. 27.

108) [impots.gouv.fr., "FORMULAIRE N°2042,"](https://www.impots.gouv.fr/formulaire/2042/declaration-des-revenus) <https://www.impots.gouv.fr/formulaire/2042/declaration-des-revenus>, 검색일자: 2023. 10. 31.

- 소득신고서에는 급여, 연금, 실업수당 및 일일수당 등의 정보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 납세자는 정보가 다른 경우에만 수정하면 됨<sup>109)</sup>
  - 급여 등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아닌 Pôle Emploi 등에게 문의해야 함<sup>110)</sup>

## 2) 제재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DSN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sup>111)</sup>
  - **(신고 관련)**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과태료가 있음
    -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 원천징수세액의 10%(최소 50유로)
    - **(불부합)**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경우 불부합 원천징수세액의 5%(최소 250유로)
  - **(납부 관련)** 미납에 대해 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미납)** 미납금액의 5%<sup>112)</sup>
    - **(고의 등 미납)** 개인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으나 고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sup>113)</sup> 3년 이내의 상습적인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과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9) economie.gouv.fr, “Le Centre de documentation Économie Finances : un service ouvert à tous,” <https://www.economie.gouv.fr/cedef/impot-revenu>, 검색일자: 2023. 11. 27.

110) impots.gouv.fr., “MY SALARIES OR PENSIONS ARE NOT PRE-FILLED, WHAT SHOULD I DO?,” <https://www-test.impots.gouv.fr/particulier/questions/mes-salaires-ou-mes-pensions-ne-sont-pas-preremplis-que-faire>, 검색일자: 2023. 11. 27.

111) RÉPUBLIQUE FRANÇAISE, “How should the employer apply the levy at source (PAS)?-Penalty for late reporting, non-reporting or erro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732>, 검색일자: 2023. 11. 27.

112) 프랑스 「조세일반법」 1731조

113)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771조 제A항 및 「형법」 제131조의13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보장세 등과 관련하여 DSN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sup>114)</sup>
- **(신고 관련)** 미제출, 지연제출, 허위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함
  - **(미제출)** 직원 1인당 18.33유로
  - **(지연제출)** 직원 1인당 55유로(1개월 늦을 때마다 부과함)
  - **(누락제출)** 직원 1인당 55유로
  - **(허위신고)** 급여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직원 1인당 36.66유로, 직원 정보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직원 1인당 12.10유로로 신고서 제출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음
- 지연제출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과태료가 면제됨
  - 지난 24개월 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과태료 액수가 3,666유로 미만인 경우
  -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 DSN을 제출한 경우
- **(납부 관련)** 납부지연 월별로 해당 금액의 0.20%<sup>115)</sup>
  - 현금 흐름, 단순 실수 등 일정 요건의 경우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3) 신고절차<sup>116)</sup>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당국에 징수자로 등록하고 사회보험기관인 URSSA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함
- 과세당국 웹사이트의 전용 섹션을 통해 소득세 등을 납부할 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 SEPA 자동이체로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등록은 필수적임

114) RÉPUBLIQUE FRANÇAISE, “Nominative Social Declaration (DSN)-Penalties for non-transmission or misrepresentation,”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4059?lang=en>, 검색일자: 2023. 11. 27.

115) URSSAF, Guide pas-à-pas, <https://www.urssaf.fr/portail/files/live/sites/urssaf/files/documents/DP-Remise-majoration.pdf>, 검색일자: 2023. 11. 27.

116)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2-23, 2022. 11., pp.136~138

- 예외<sup>117)</sup>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 관련 신고는 ‘사회보장명세서(DSN)’를 통해 이루어짐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적 급여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 엄격한 프랑스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법이 반영된 전자적 급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편임
    - 다만, 전자급여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은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모든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 관련 정보를 DSN로 제출함
    - DSN은 급여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생성됨
    - 월지급액이 없더라도 매월 DSN을 발행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DSN을 통해 근로자와 관련한 데이터는 모든 사회기관으로 자동 통보됨
  - 이러한 사회보장기관으로는 Pôle emploi, CPAM<sup>118)</sup>, Urssaf, Agirc-Arco<sup>119)</sup> 등이 있음
  
- 근로자는 과세당국의 웹사이트인 [impots.gouv.fr](http://impots.gouv.fr)의 ‘원천징수관리(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에서 근무 관련 변동사항(결혼, 출산, 퇴사, 승진, 소득변동 등)을 보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음<sup>120)</sup>
  - 근로자가 근무 관련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면, 동 자료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송됨
    - 변동사항은 최대 2개월 이내 적용됨

117) DADS-U(항만노동자, 국외노동자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신고), DOETH(장애인근로자 신고) 등

118) Primary health insurance fund의 약어임

119) General Association of Employee Pension Institutions - Association for the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for Employees의 약어임

120) [impots.gouv.fr](http://impots.gouv.fr), “Gérez votr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ans : Votre espace particulier,” [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 검색일자: 2023. 12. 18.

- 근로자의 업데이트가 끝나면 새로운 원천징수세율과 필요 시 새로운 세액이 계산 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은 업무의 중단(질병, 출산 등), 업무의 조기 재개(업무 중단 종료일 이전 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계약해지(퇴직 등) 등임

[그림 III-1] 프랑스의 근로자 전용메뉴 원천징수관리

Avec "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 je déclare :

- ▶ Un mariage ou un Pacs
- ▶ L'arrivée d'un enfant
- ▶ Un départ à la retraite
- ▶ Un changement de situation professionnelle


**VOUS VOUS ÊTES DIT « OUI » ?**  
**UN ENFANT EST ARRIVÉ DANS VOTRE VIE ?**  
**VOUS AVEZ EU VOTRE PROMOTION ?**  
**VOUS PARTEZ À LA RETRAITE ?**  
**VOUS L'AVEZ DIT À TOUT LE MONDE ?**

**DITES-LE NOUS AUSSI !**

Parce que la vie change et qu'elle est faite d'événements heureux, et parfois moins heureux, prévus ou inattendus... grâce au prélèvement à la source, vous pouvez adapter votre impôt au plus près de vos changements de situation.

En effet, si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varie mécaniquement en fonction de vos revenus, le taux, lui, reste inchangé jusqu'à votre prochaine déclaration de revenus l'année suivante. C'est pourquoi, vous pouvez nous demander à le recalculer et le faire correspondre à votre nouvelle situation : demi-part supplémentaire pour l'arrivée d'un enfant, déclaration commune pour les mariages ou les Pacs, augmenter ou baisser son taux en cas de promotion, de départ à la retraite, de perte d'emploi...


L'objectif ? Ne pas faire d'avance sur votre impôt et réduire le montant potentiel qui vous sera remboursé ou que vous devrez payer l'année prochaine.



**Un mariage ou un pacs ?**



**L'arrivée d'un enfant ?**



**Un départ à la retraite ?**



**Un changement de situation professionnelle ?**

자료: [impots.gouv.fr](https://www.impots.gouv.fr), "Gérez votr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ans : Votre espace particulier," [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 검색일자: 2023. 12. 18.

- 프랑스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3월 20일까지 개인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통지서(TAX NOTICE)를 제공함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동이체로 납부함
  - 300유로 이하인 경우 1회로 납부하고 300유로 초과인 경우 4회로 분할징수함

〈표 III-2〉 프랑스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

구분	1월 ~ 12월
원천징수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기)</b> 매월 DSN을 5일 또는 15일까지 신고 후 납부<sup>1)</sup></li> <li>• <b>(수시)</b>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sup>2)</sup>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 보고</li> </ul>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확정)</b>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서(Formulaire 2042)<sup>3)</sup>를 3월 20일까지 제출</li> <li>• <b>(수시)</b> 근로자는 근무 관련 변동사항(결혼, 출산, 퇴사, 승진, 소득변동 등)을 과세당국의 웹사이트인 <a href="http://impots.gouv.fr">impots.gouv.fr</a>의 '원천징수관리(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에 보고하여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주: 1) 과세관청에 등록된 계좌의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외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지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함  
 2)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은 업무의 중단(질병, 출산 등), 업무의 조기 재개(업무 중단 종료일 이전 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계약해지(퇴직 등)로 매월 제출하는 DSN과 수시 제출해야 함  
 3) 소득신고서는 급여 등의 정보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 납세자는 정보가 다른 경우에만 수정하면 되고, 급여 등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아닌 Pôle Emploi 등에게 문의해야 함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덴마크

- 덴마크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인 노동시장기여금(AM-Bidrag)과 노동시장보충연금(Arbejdsmarkedets Tillægspension)을 원천징수함<sup>121)122)</sup>
- 일반적으로 소득세, 지방세, 실업기금, 교회세를 부과하며, 대상소득으로는 개인

소득(급여, 현물급여,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등), 자본소득(이자소득, 이자비용, 순과세자본이익 등), 주식수익 등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상이함

- 덴마크 과세당국은 소득을 유형별(A, B)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A소득' 구간으로 소득세(A-Skat)가 부과됨
- 덴마크 내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최저세율인 12.09%부터 최고 15%로 부과하며, 사회보장기여금도 마찬가지로 덴마크 내 근로자 및 거주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 노동시장기여금(AM-Bidrag) 덴마크 과세당국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지만 조세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교육·출산 등 노동시장비용으로 사용되며, 덴마크 과세당국(Skattestyrelsen)이 징수함
  - 노동시장보충연금(ATP)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로 덴마크 내 주 9시간 이상 근로하는 16세부터 66세까지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부하며, 노동시장연금관리기관(ATP)에서 관리함

□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Forsikringspligt for arbejdsulykker)과 근로자 대상 업무상질병보험(Erhvervssygdomsforsikring)이 있음<sup>123)124)</sup>

- 사업주만 납부하는 산재보험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업무 분야, 고용주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수,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sup>125)</sup>
- 사업주가 납부하는 건강보험(Sundhedsforsikring)은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인 복리후생으로, 공공의료보험과 구분됨<sup>126)</sup>

121) PWC,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denmark/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3. 12. 3.

122)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Reporting pay in E-income," <https://skat.dk/en-us/businesses/employees-and-pay/reporting-pay-e-income/reporting-pay-in-e-income>, 검색일자: 2023. 12. 3.

123) Arbejdsmarkedets Erhvervssikring, "Forsikringspligt for arbejdsulykker," <https://www.aes.dk/sagsforloeb/arbejdsgiver/forsikringspligt-arbejdsulykker>, 검색일자: 2023. 12. 4.

124) 「Bekendtgørelse af lov om arbejdsskadesikring(Arbejdsskadesikringslovens)」 § 1

125) PWC,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https://taxsummaries.pwc.com/denmark/individual/other-taxes>, 검색일자: 2024. 1. 4.

- 덴마크 공공의료보험(Sygesikring)과는 별개의 개념<sup>127)</sup>으로, 공공의료의 경우 1군, 2군으로 분류되어 덴마크 내 거주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1)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 제출의무

- **(신고·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매월 근로자의 급여를 신고해야 하며,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의 급여신고 시스템(Elndkomst), 급여신고 대리인, 자체 신고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음
  - Elndkomst(TastSelv) 프로그램<sup>128)</sup>은 덴마크 과세당국의 근로자의 소득(급여, 실업수당, 연금 등 포함)에 대한 신고 프로그램이며, 덴마크 기업청(Erhvervsstyrelsen)에 사업주로 등록된 신고의무자(사업주 등)가 근로자의 급여 정보(급여세 등)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함<sup>129)</sup>
- 근로자의 급여신고 시 근로자의 소득(A-소득세), 휴일수당, 노동시장 연금과 동시 장기연금을 포함하여 매월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함<sup>130)</sup>
  - 급여신고의 신고·납부 기한은 기업의 종류(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여 덴마크 과세당국에서 발표됨<sup>131)</sup>
    - 대기업이란 노동시장 기여금이 250,000크로네 이상 또는 연간 소득세(A-Skat)가 100만크로네 이상인 기업임

126) Borger.dk, “Sygesikring og sikringsgrupper,” <https://www.borger.dk/sundhed-og-sygdom/sygesikring-og-laegevalg/Sygesikring-og-sikringsgrupper>, 검색일자: 2023. 12. 4.

127) 또한 덴마크는 EU 통합 의료보험카드(EU-sygesikringskort)으로 덴마크 외 25개국 유럽연합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28)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eIndkomst: Vejledning til pc-programmet eIndkomstindberetning,” <https://info.skattestyrelsen.dk/data.aspx?oid=1745513>, 검색일자: 2023. 12. 4.

129) Skattestyrelsen, “Paying A-tax and labour market contributions (am-bidrag),” <https://skattestyrelsen.dk/en-us/businesses/employees-and-pay/reporting-pay-e-income/paying-a-tax-and-labour-market-contributions-am-bidrag>, 검색일자: 2023. 12. 3.

130)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https://skattestyrelsen.dk/erhverv/ansatte-og-loen/indberet-loen-eindkomst/skat-af-ansattes-loen>, 검색일자: 2023. 12. 4.

131)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 중소기업이란 노동시장 기여금이 250,000크로네 미만 또는 연간 소득세(A-Skat)가 100만 크로네 미만인 기업임
  -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금액을 '0'으로 신고함
- **(납부)** 사회보장기여금인 노동시장기여금(AM-Bidrag)은 고정요율인 8%로 근로자가 납부함
- 덴마크의 노동시장기여금은 조세(Skat)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함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함<sup>132)133)</sup>
  - 근로소득(A소득)에서 부과되는 소득세(A-Skat)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당국에 계좌로 직접 납부함
    - 2023년 기준 개인공제수당(Personfradrag)은 48,000크로네로, 개인공제수당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sup>134)</sup>
  -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납부하며 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급여로 부과함
- ATP 연금은 덴마크 내 주 9시간 이상 근로하는 16세부터 66세까지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3, 사업주가 2/3을 납부함<sup>135)</sup>
- ATP 기여율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뉘며 근로자별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이함<sup>136)</sup>
    - 2023년 기준 월 177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ATP 연금 납부액은 총 284크로네이며, 근로자 부담액은 94.65크로네임

132) 「Kildeskatteloven」 § 49A, Stk. 2 I

133) 「Bekendtgørelse af lov om arbejdsmarkedsbidrag (arbejdsmarkedsbidragsloven)」

134) Skattestyrelsen, "Tax Rates," <https://skat.dk/hjaelp/satser>, 검색일자: 2023. 12. 4.

135) Borger.dk, "ATP Livslang Pension," <https://www.borger.dk/pension-og-efterloen/ATP-Livslang-pension-oversigt/ATP-Livslang-Pension>, 검색일자: 2023. 12. 4.

136) Borger.dk., "ATP Contribution Rates 2023 for the Private Sector," <https://lifeindenmark.borger.dk/pension/atp-livslang-pension/atp-contribution-rates-private-sector>, 검색일자: 2023. 12. 4.

- **(수정)** 신고의무자가 급여지급에 대한 변동, 오류, 누락 등의 이유로 수정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eIndkomst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음<sup>137)138)</sup>
  - 신고의무자는 수정 대상자의 덴마크 시민식별번호(cpr-nr)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과세관청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함
  -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기한이 지연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함
    - 원칙적으로 근로자 급여 관련 변동사항(오류 등) 발생 시 변동사항이 발생한 그달에 수정신고를 해야 함
  
- **(정산)** 덴마크는 근로자의 소득 및 공제수당 등이 변경되었을 때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2) 제재사항

- 신고의무자가 급여,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부할 신고액을 추정할 수 있음
  - 이는 예비(임시)결정(foreløbig fastsættelse(FF))이라 하여 각 결정에는 800크로네의 수수료를 부과함<sup>139)</sup>
  - 과세관청의 예비결정(FF)를 통보받은 자는 누락된 정보 및 급여를 신고하고, 소득세(A-세금), 사회보장기여금과 가산이자를 납부해야 함
  - eIndkomst을 통해 급여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거부로 인해 예비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수료 부과대상임

137) Skattestyrelsen, "Rettelser," <https://info.skat.dk/data.aspx?oid=2045884>, 검색일자: 2023. 12. 4.

138) 상동, "Reporting pay in E-income," <https://skat.dk/erhverv/ansatte-og-loen/indberet-loen-eindkomst/saadan-indberetter-du-loen-eindkomst>, 검색일자: 2023. 12. 4.

139) Skattestyrelsen, Sådan indberetter du løn (eIndkomst), <https://skat.dk/erhverv/ansatte-og-loen/indberet-loen-eindkomst/saadan-indberetter-du-loen-eindkomst>, 검색일자: 2023. 12. 4.

- 예비결정은 최근 3개의 신고내역을 평균으로 하여 결정액을 결정하고, 신고금액이 1,000크로네 이하인 경우 0크로네로 설정함
  -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7,000크로네, 노동시장기여금은 1,000크로네로 고정됨
- 신고의무자가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예비결정액만 납부한 경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sup>140)</sup>
- 신고를 수행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및 수익회수가 금지되며, 4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정확한 급여신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3) 신고절차<sup>141)</sup>

- 원천징수의무자는 덴마크 기업청(Erhvervsstyrelsen)에 사업주로 등록해야 하며, 자체 급여시스템이나 급여대행사, 과세당국의 'eindkomst'로 매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sup>142)</sup>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 급여신고 후 원천징수한 A-세금과 노동시장기여금을 납부하고, 과세당국에 등록된 사업자(기업)용 전자세금계정(TastSelv Erhverv skattekontoen)에서 신고하거나 근로자별 개별 파일을 통해 별도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사업주는 매월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배포할 의무가 있어, 근로자가 소득 및 공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140) Skattestyrelsen, Sådan indberetter du løn (eIndkomst), <https://skat.dk/erhverv/ansatte-og-loen/indberet-loen-eindkomst/saadan-indberetter-du-loen-eindkomst>, 검색일자: 2023. 12. 4.

141) <https://skat.dk/hjaelp/blanketter/05-skat-selskabsskat-blanketter/anmodning-om-216-erklaering>

142) Skat, "Paying A-tax and labour market contributions (am-bidrag)," <https://skat.dk/en-us/businesses/employees-and-pay/reporting-pay-e-income/paying-a-tax-and-labour-market-contributions-am-bidrag>, 검색일자: 2024. 1. 2.

- 납부는 자동이체(Nets PBS) 서비스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하며 덴마크 외 은행 계좌에서 결제할 수도 있음
  - 자동이체(Nets)서비스에 가입하여 납부할 경우 A-세금, 노동시장기여금 및 연금보험료(ATP)가 자동이체되어 납부됨
  - 온라인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매월 A-세금과 노동시장기여금을 청구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음
  - 납부액은 전자세금계정에서 신고마감일 이후 영업일 기준 2~3일 후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자가 과세당국의 'eIndkomst'로 신고 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시민등록번호 등)를 기입하고,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시간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함<sup>143)</sup>
  -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노동시장기여금, 노동시장연금(ATP)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별도로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음<sup>144)</sup>
  - 덴마크 외 거주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과 관계없이 개인 세금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함
    - 덴마크 당국의 시민등록 시스템에서 소득 수령자가 덴마크에서 현재 출국한 상태인지를 확인함
  
- 덴마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이 없으며 일부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하는 항목 외에는 사업주로부터 수집된 정보로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확정 세금부과통지서를 발급함<sup>145)146)</sup>

143) Skat, "Paying A-tax and labour market contributions (am-bidrag)," <https://skat.dk/en-us/businesses/employees-and-pay/reporting-pay-e-income/paying-a-tax-and-labour-market-contributions-am-bidrag>, 검색일자: 2024. 1. 2.

144) ATP Livslang Pension, "Selvbetjening," <https://virk.dk/vejledning/atp/selvbetjening/>, 검색일자: 2024. 1. 4.

145) Skattestyrelsen, "Årsopgørelsen," ["https://skat.dk/en-us/individuals/income-preliminary-](https://skat.dk/en-us/individuals/income-preliminary-)

- 과세관청은 사업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계산하여 3월에 결정세액을 통보하고, 4월 중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sup>147)</sup>
  - 확정된 세금부과통지는 전년도 최종 결정세액으로, 세금부과통지서는 수정 마감일인 5월 1일까지 수정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세액 환급 시 자동으로 납세자의 계좌(Nemkonto)에 입금됨
- **(사전소득심사)** 과세관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에 납부할 소득과 세금에 대한 평가로 예상소득과 공제수당, 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소득평가(Preliminary income assessment)를 발급함
-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의 11월까지 기준)** 과세관청에 의해 상시 조정될 수 있음

〈표 III-3〉 덴마크의 근로소득 관련 신고일정

구분	1월~12월
원천징수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기)</b> 매월 (A)소득 및 노동시장기여금, ATP 연금<sup>1)</sup>을 신고 후 납부</li> <li>• <b>(수시)</b> 급여의 변동, 오류 등의 사유로 정정 시 그달에 수정 신고</li> </ul>
과세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시)</b> 사업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사전소득심사를 진행하고, 11월 중 근로자가 확인하고 과세관청에 의해 상시 정정될 수 있음</li> <li>• <b>(확정)</b>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3월 중순에 통지하고, 확정된 세금부과통지서는 마감기한인 5월까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할 수 있음</li> </ul>

주: 1) 노동시장보충연금(ATP)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함(4분기)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income-assessment-and-tax-assessment-notice/tax-assessment-notice/tax-assessment-notice-aarsopgoerelse, 검색일자: 2024. 1. 3.

146) Borger.dk “Penge tilbage i skat,” <https://www.borger.dk/oekonomi-skat-su/Skat/Penge-tilbage-i-skat>, 검색일자: 2024. 1. 3.

147) Skattestyrelsen, “Relevant dates for the 2023 tax assessment notice,” <https://skat.dk/en-us/individuals/income-preliminary-income-assessment-and-tax-assessment-notice/tax-assessment-notice/relevant-dates-for-the-tax-assessment-notice>, 검색일자: 2024. 1. 3.

## 다. 일본

- 일본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sup>148</sup>(復興特別所得稅))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및 연금)는 사업주가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희망 시 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납부할 수 있음<sup>149</sup><sup>150</sup>
- 원천징수의무자(源泉徴収義務者)로는 개인, 사업주(회사)뿐만 아니라 급여 등의 지급을 하는 학교, 관공청, (법)인격이 없는 사단도 이에 포함됨
-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됨
  - 국민연금과 구별되는 ‘후생연금(厚生年金)’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의무가입으로, 음식점 및 서비스업은 제외
  - 개호보험의 경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 총 보험료의 산정은 피보험자의 지급 능력(수입)에 따라 결정

### 1)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출의무

- **(소득세 신고·제출)** 사업주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급여지급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소득세 납부)**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인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함<sup>151</sup>
  - 소득세는 7단계로 구분되어 소득구반별로 최저 5%부터 최고세율인 45%의 세율로 과세하여 다음과 같음

148)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稅)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소득세액(공제 후 세액)에 2.1%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각 연도분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함

149) 國稅廳(일본 국세청), “源泉徴収義務者とは,”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502.htm>, 검색일자: 2023. 12. 5.

150) 日本年金機構(일본연금기구), “保険料の計算方法について,”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nofu/20121026.html>, 검색일자: 2023. 12. 5.

151) 國稅廳, “所得稅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 검색일자: 2023. 12. 5.

〈표 III-4〉 일본의 연 소득별 공제한도 및 소득세율

(단위: 엔, %)

소득기준(연 소득)	공제한도	세율
1,000엔부터 1,949,000엔	0엔	5%
1,950,000엔부터 3,299,000엔	97,500엔	10%
3,300,000엔부터 6,949,000엔	427,500엔	20%
6,950,000엔부터 8,999,000엔	636,000엔	23%
9,000,000엔부터 17,999,000엔	1,536,000엔	33%
18,000,000엔부터 39,999,000엔	2,796,000엔	40%
40,000,000엔 이상	4,796,000엔	45%

자료: 일본국세청(国税庁),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23. 12. 5.

- 의료비, 사회보험료, 소규모 기업 공제 등 소득공제 및 피부양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제 후 세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함
  - 또한 기초공제(基礎控除)로 일정구간의 소득자(2,400만엔부터 2,500만엔 이하)를 대상으로,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sup>152)</sup>
  - 상시 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납부를 7월과 그 다음 해 1월로 연 2회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
- 부흥특별소득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소득세액(공제 후 세액)에 2.1%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각 연도분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함
- **(사회보험 신고·제출)** 사업주는 사회보험별 담당 징수처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후생연금 포함)과 건강보험의 경우 일본연금기구에 신고하며, 노동보험(労働保險)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에 각각 신고·납부함<sup>153)154)</sup>

152) 國稅廳, “基礎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9.htm>,  
검색일자: 2023. 12. 5.

- **(노동보험)** 사업장 관할 도도부현 지방노동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고, 사업주는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함께 신고 및 납부함<sup>155)</sup>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시 노동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납부 대상임
- 노동보험과 연금·건강보험은 전자신고,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사회보험의 납부)** 연금, 건강보험 및 노동보험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고,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반액 부담,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부담함
  - 사업주가 피보험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의 부담분까지 일괄 납부함
  - **(연금 및 건강보험)** 일본연금기구는 매월 20일 사업장에 납부고지서를 통보하고, 보험료 납부기한인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함<sup>156)157)</sup>
    - 후생연금의 보험요율은 18.3%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9.15%씩(반액) 부담함
    - 건강보험의 경우 각 도도부현에 따라 비율이 상이하며, 2023년 도쿄 기준 10%임<sup>158)</sup>
    - 보험료는 각 관할 연금관리 사무소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으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은행창구 납부가 있음
  - 노동보험의 납부방법으로는 현금, 계좌이체, 전자납부(인터넷 뱅킹 등)와 노동보험사무조합(労働保険事務組合)에 위탁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sup>159)160)</sup>

153) 日本年金機構, “納付方法,”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nofu/20120330-03.html>, 검색일자: 2023. 12. 5.

154)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労働保険料の申告・納付,” [https://www.mhlw.go.jp/www2/topics/seido/daijin/hoken/980916\\_3.htm](https://www.mhlw.go.jp/www2/topics/seido/daijin/hoken/980916_3.htm), 검색일자: 2023. 12. 5.

155)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労働保険の適用・徴収,”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hoken/](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hoken/), 검색일자: 2023. 12. 5.

156) 日本年金機構, “納付方法,”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nofu/20120330-03.html>, 검색일자: 2023. 12. 5.

157) 日本年金機構, “厚生年金保険料等の納付,”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nofu/nofu.html>, 검색일자: 2023. 12. 5.

158)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全國健康保険協會), “令和5年度保険料額表(令和5年3月分から),” <https://www.kyoukaikenpo.or.jp/g7/cat330/sb3150/r05/r5ryougakuhyou3gatukara/>, 검색일자: 2023. 12. 5.

- 고용보험료는 고정요율로 1.55%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운수업, 기타 사업 등 업종에 따라 세분되어 각 비율이 다름
  -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여 납부하는 경우 노동보험의 신고만 위탁할 수 있으며, 납부는 사업주가 직접 납부함
  - 연 1회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험료를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함께 납부함
  -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임
- 개산보험료가 40만엔인 경우(노동보험 중 1개의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만엔)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함(3회)
- 일본의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음

〈표 Ⅲ-5〉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및 요율

보험	급부	적용	요율(연간임금 총액의 %)	
			사업주	근로자
후생연금	노령, 장애, 사망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일정 업종의 개인사업장 등	9.15%	9.15%
건강보험·개호보험(40세 이상)	업무상 통근 중 이외의 상병, 출산 등에 대하여 급부		5.00% (40세 이상인 자는 5.91%)	5.00% (40세 이상인 자는 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 휴업 취득자·고령자에게 급부 등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	0.95%	0.6%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상 및 통근 중 재해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요양비, 휴업,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0.3% (소매업 기준)	-
합계			15.4% (40세 이상인 자는 16.31%)	14.75% (40세 이상인 자는 15.66%)

주: 1) 후생연금의 경우 4인 이상의 근로자가 후생연금 가입에 동의 시 가입할 수 있음  
 2)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 도쿄도 기준이며, 도도부현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 일본연금기구 및 후생노동성 자료 기반 저자 정리

159)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160)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労働保険料の申告・納付,” [https://www.mhlw.go.jp/www2/topics/seido/daijin/hoken/980916\\_3.htm](https://www.mhlw.go.jp/www2/topics/seido/daijin/hoken/980916_3.htm), 검색일자: 2023. 12. 5.

- **(정산)** 일본은 연말조정(정산)을 통해 과세연도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고 원천징수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함<sup>161)</sup>
  -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제출한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함
  -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등)의 구분이 없으므로 부양공제신고서를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함
    - 서면제출, e-tax, 스마트폰, CD·DVD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통해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총소득금액과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의 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예상 납부한 세액 등과의 과부족을 정산할 수 있음
    -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연말조정(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제재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납세 및 불납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체납(법정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경우 완납하는 날까지 연체세와 함께 납부해야 함<sup>162)163)</sup>
  - **(연체료의 계산)** 납부기한의 그다음 날부터 2개월까지 원칙적으로 연 7.3%의 이자로 납부하거나 연체세 특례 기준비율 + 1% 중, 더 낮은 비율로 부과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비율은 연 2.4%임

161) 일본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hotei/23100051.htm>, 검색일자: 2022. 10. 19.

162) 國稅廳, “延滯稅の計算方法,” <https://www.nta.go.jp/taxes/nozei/entaizei/keisan/entai.htm>, 검색일자: 2023. 12. 6.

163) 상동,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osirase/9205.htm>, 검색일자 2023. 12. 6.

- 납부기한의 그다음 날부터 2개월 이후부터는 연 14.6% 이자 또는 연체세 특례 기준비율 + 7.3%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비율은 연 8.7%임
  - 과세관청의 연체료 독촉 및 세액고지서를 통보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산의 압류(부동산 등) 및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 노동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의 경우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에서 가입 독촉과 연체금(延滞金)의 독촉(고지)·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sup>164)</sup>
- 정부는 납부의무자가 노동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보험료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함
    - 노동보험료 독촉장을 고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의 일수에 따라 연 14.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체금을 부과함
  - 노동보험료 액수가 1,000엔 미만이거나, 체납처분 집행의 정지 및 유예 및 기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음

### 3) 신고절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세(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고, 사회보험인 건강보험·후생연금은 연금기구에, 노동보험의 경우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납부함<sup>165)</sup>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한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급여, 지급일자,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총액 등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후 납부함<sup>166)</sup>

164)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제27조

165) 国税廳, 事業主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源泉徴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110.htm>, 검색일자: 2024. 1. 3.

- 과세관청 E-Tax 웹사이트, 우편,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직접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
  - 노동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은 연말조정(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관청에 사회보험료 공제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후생연금은 근로자 채용 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5일 이내로 관할 연금사무소 또는 연금사무센터에 제출함<sup>167)</sup>
- 피보험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등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로는 근로자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연금수첩 또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음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 발생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관할 연금사무소 또는 연금센터로 신고함
- 노동보험의 신고는 노동보험 개산·확정보험료·석면건강피해구제법 일반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보험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도도부현 노동청 또는 근로기준감독서에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함<sup>168)</sup>
- 신고서에는 노동보험번호,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보험료율 등이 기재되어 도도부현 노동청에서 각 사업주에게 송부함
- 일본 정부는 디지털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과 데이터 활용 추진으로 온라인·간소화된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절차 원스톱 서비스(社会保険·税 手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를 제공하고 있음<sup>169)</sup>

166) 國稅廳, “令和5年分 源泉徴収税額表,”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22/02.htm>, 검색일자: 2024. 1. 3.

167)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tekiyo/hihokensha1/20150422.html>, 검색일자: 2024. 1. 3.

168) 厚生労働省(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労働保険の年度更新とは,” <https://www.mhlw.go.jp/bunya/roudoukijun/roudouhoken01/kousin.html>, 검색일자: 2024. 1. 3.

169) 國稅廳, “納税者サービスの充實と行政効率化のための取組,”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report/2020/02\\_6.htm](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report/2020/02_6.htm), 검색일자: 2024. 1. 4.

- ‘마이너포털 API(マイナポータル)’<sup>170</sup>의 해당 포털을 통해 지방세, 국세, 사회보험 등의 전자신고서를 1개의 창구로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이너포털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자의 동의하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전용 급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함
-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계정 등록부터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연금 등)의 신청, 조회, 수정, 취하 기능을 제공함
  - 개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로 인증함
  - 법인공통인증기반의 ‘G비즈니스ID’를 이용한 인증에도 대응하여 인증방식(전자증명서 또는 법인공통인증기반)마다 다른 인증용 API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마이너포털 API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① 사업주 등은 급여 소프트웨어로 신고 데이터를 입력하여 마이너포털에 신고하고, ② 마이너포털에서 각 신청서 기관을 위한 데이터로 가공·변환 후 각 신청처로 데이터를 전송, ③ 각 기관은 마이너포털에 신고상황을 보고하여 신고상황을 확인하는 구조임
- 개인은 마이넘버카드<sup>171</sup>)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세금, 소득내역, 지방세, 연금 등의 사회보험, 노동보험 등의 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조회할 수 있음<sup>172</sup>)
- 마이너포털을 이용하여 신고 시 납세자의 소득내역 등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신고서에 자동 입력되어 신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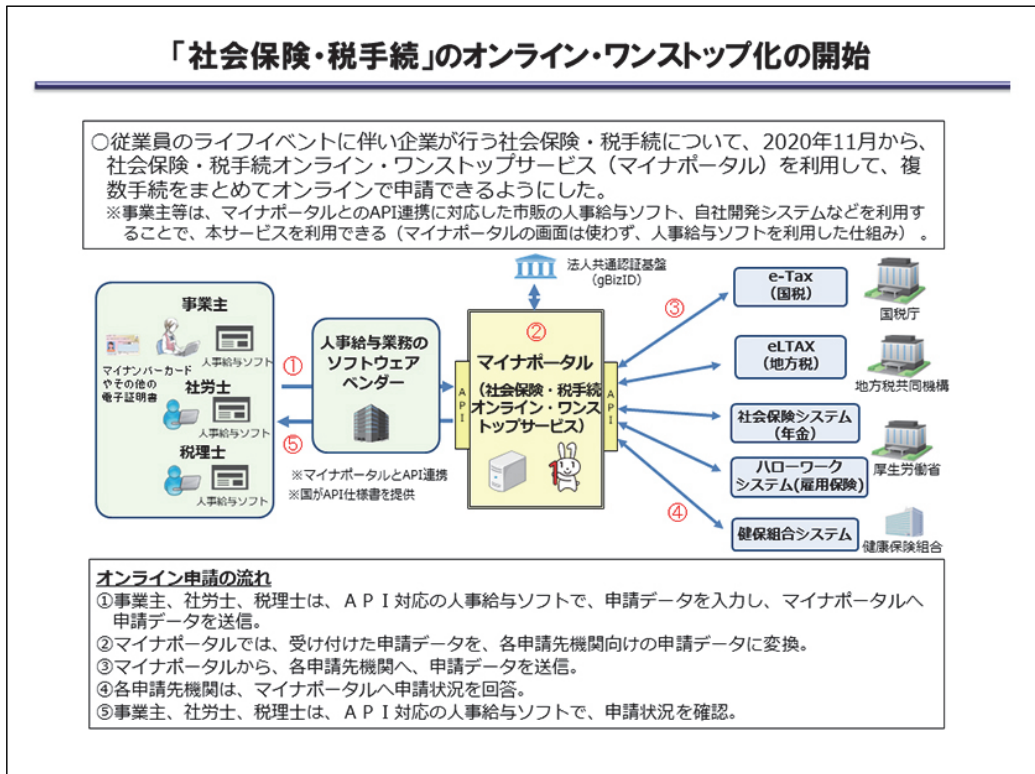
170) 마이너포털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너포털 API 사양서의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사용자로 등록해야 하고, 현재 마이너포털 API를 제공하는 업체가 업데이트되고 있음

171) 일본의 마이넘버는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횡단적인 공통번호로, 오프라인 신분증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적 개인인증을 위한 전자증명서를 탑재하여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마이너포털 온라인서비스로 세대정보, 세금·소득 정보, 건강보험, 복지, 노동보험 등에 대해 정보 확인 및 알림, 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72) 國稅廳, “マイナポータル連携可能な控除証明書等発行主体一覧,”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mynumberinfo/list.htm>, 검색일자: 2024. 1. 3.

-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사회보험료 공제증명서 등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음

[그림 III-2] 일본 마이너포털 API 구조



자료: 일본 디지털청(디지털庁) 마이너포털 사양 공개 사이트(마이나포털API仕様公開사이트), “「社会保険・税手続申請API」とは,” <https://myrna.go.jp/html/api/tetsuzukishin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1. 4.

### 3. 국가별 납세협력 현황

- 국가별 조세와 사회보험 관련 납세협력 현황은 World Bank가 발표한 ‘Doing Business’ 보고서 중 ‘Paying Tax’를 통해서도 비교할 수 있음<sup>173)</sup>
  - Paying Tax는 대상 나라의 표준화된 회사가 세금업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납세협력을 신고 및 납부횟수, 신고 및 납부 소요시간 등으로 수치화함
  - 동 지표에는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 과세관청을 대신해 근로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사가 징수하는 세금이 포함됨<sup>174)</sup>
    - 원천징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세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하므로 Paying Tax에 포함되는 것임
- Paying Tax 분야 중 원천징수 관련 주요국의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은 아래 표와 같음
  - 표준화된 회사의 과세기간은 2018년도이고 신규가 아닌 2년 차 운영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기준 자료로 2019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간이 지급명세서의 동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세금 및 기여금(taxes and contributions) 내역은 명칭이 다르거나 징수기관이 다른 경우 별개의 것으로 간주함
  - 2 이상의 세금 또는 기여금이 동일한 신고서식으로 신고 및 납부되는 경우 1회로 산정함<sup>175)</sup>
  - 신고는 전자제출을 가정하고 연중 수시로 신고 및 납부하더라도 1회로 측정함
  - 신고 및 납부 소요시간은 연간 소요시간으로 세무정보 수집, 신고서식 작성, 신고서식 제출, 납부 등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함

173) THE WORLD BANK, “Paying Taxes methodology,” <https://archive.doingbusiness.org/en/methodology/paying-taxes>, 검색일자: 2023. 12. 18.

174) Doing Business의 측정된 세금 및 기여금 내역에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회기여금 및 노동세, 재산세, 재산양도세, 배당세, 양도소득세, 금융거래세, 폐기물수집세, 자동차세 및 도로세, 기타 소액세금이 포함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Paying Tax 측정에만 포함됨

175) 건강보험기여금과 연금보험기여금의 신고서식이 하나로 제출되는 경우 1회로 산정함

〈표 III-6〉 국가별 원천징수 관련 납세협력

구분		세금 및 기여금 내역	신고 및 납부횟수	신고 및 납부 소요시간	과세기준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급여 소득세</li> <li>• 근로자 급여 지방소득세</li> <li>•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li> <li>• 근로자 부담 국민건강보험</li> <li>•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li> <li>• 고용주 부담 국민연금</li> <li>• 고용주 부담 국민건강보험</li> <li>• 고용주 부담 장기요양보험</li> <li>• 고용주 부담 재해보상보험</li> <li>• 고용주 부담 실업보험</li> </ul>	2	80	총급여 등
통합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급여 소득세</li> <li>•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li> <li>• 근로자 부담 국민보험료</li> </ul>	2	57	총급여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급여 소득세</li> <li>• 고용주 급여세(payroll tax)<sup>1)</sup></li> </ul>	1	36	총급여
분리형 (징수 업무 지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li> <li>•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li> <li>• 고용주 급여세(payroll tax)</li> </ul>	2	80	총급여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부담 사회연금기여</li> <li>•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li> <li>•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ATP)</li> <li>• 고용주 급여세(기타 공공 사회 보장 제도)</li> <li>• 고용주부담 기타 세금 및 의무적 사회기여금</li> </ul>	1	65	총급여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li> <li>• 근로자 부담 후생연금보험</li> <li>•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li> <li>• 고용주 부담 후생연금보험</li> <li>•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li> <li>• 고용주 부담 산재보상</li> <li>• 고용주 부담 고용보험</li> <li>• 고용주 부담 아동수당기여금</li> </ul>	3	70.5	총급여

주: 1)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사회보장기여금 및 기타 세금)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세금은 경제권마다 다른 용어로 지칭될 수 있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고용주 급여세(payroll tax)’로 표기)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구분됨(THE WORLD BANK, “Paying Taxes Questionnaire - Survey Economy,” p.4)

자료: THE WORLD BANK, “Paying Tax,” <https://archive.doingbusiness.org/en/data/explore-topics/paying-taxes>, 국가별 자료 중 “Details - Paying taxes” 표를 기반으로 작성, 검색 일자: 2023. 12. 18.

- 조세·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영국과 스웨덴은 분리 징수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신고 및 납부횟수가 작고 소요시간은 짧으며 세금 및 기여금 내역은 단순함
  - 소득자별 소득정보를 매월 일원화된 서식에 작성하여 과세관청 한 곳으로 제출함
  -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율은 상이하며 이를 소득자별 코드를 통해 관리함
    - 영국은 납세코드(tax code), 스웨덴은 A-세금증명서(A-skattsedel)를 통해 소득자별 적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
  - 원천징수 대상 사회보험이 단순한 것도 요인으로 보임
    - 영국은 단일 사회보험인 국민보험료, 스웨덴은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함
  
-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보험의 원천징수 관련 납세협력은 국가별 사례 조사와 World Bank의 국가별 비교자료를 통해 과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 사회보험공단의 소득자료 공유에 있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식이 다양하고 신고서식별 신고내용, 신고기한, 제출기관, 제재사항 등이 다름
  - 사회보험공단은 소득자별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의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회보험료의 정산, 산정 등 징수업무에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시간이 소요됨

## IV. 개선방안

### 1.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

- 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조세 신고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가 있고 서식별 신고내용은 상이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별 원천징수내역에 대한 신고서임
-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 소득내역에 대한 신고서임
- 연간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 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신고서임

〈표 IV-1〉 조세의 신고서식 비교

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이 지급명세서 <sup>1)</sup>	연간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반기: 7월 31일 •하반기: 다음연도 1월 31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내용	제출 대상소득	총지급액 <sup>2)</sup>	총급여액 <sup>3)</sup>	총급여액 <sup>4)</sup>
	제출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별 원천징수 내역	근로자의 개인별 대상소득 내역	근로자의 개인별 소득세 정산내역
제재사항		원천징수 등 납부가산세 (미납세액의 3% + $a$ ) <sup>5)</sup>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의 1%)

- 주: 1)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총급여액에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더한 금액임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인정상여'로 제출되고, 이 외 과세소득은 '급여등'으로 제출됨  
 4)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로 제출됨  
 5)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본 보고서의 해외사례 중 조세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급명세서와 유사한 신고서를 매월 제출함
  - 소득자별 소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지급명세서와 유사한 신고서를 원천징수 신고서로 제출함
    - 영국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실시간 FPS를 통해 소득자별 소득정보 등을 보고하고, 스웨덴은 지급일의 다음 달 12일까지 소득자별 신고서를 제출함
  
-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sup>176)</sup>에 따라 임금대장 유지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시 자료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작성을 수행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 터존<sup>177)</sup> 등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에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신고내용은 상이하나 신고서는 동일한 자료를 통해 작성할 수 있음
  -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방법은 99.7%가 전자신고이고, 전자신고 중 85.9%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임<sup>178)</sup>
    - 총신고건수 15,406,589건 중 15,364,471건이 전자신고이고, 전자신고 중 13,205,995건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임
    -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ERP 등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입업체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므로, 원천징수 관련 신고서 역시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일한 원시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신고서를 하나로 제출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건수를 줄여 신고절차를 개선할 수 있음

176) 2021. 5. 18. 개정되고 2021. 11. 19. 시행된 것(법률 제18176호)을 말함

177) 국내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1위 그룹임

178) 국제통계포털,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4/4) 참조

- 개정법령의 시행에 따라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관련 조세의 신고서를 연간 최대 25건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대 12건, 간이 지급명세서 최대 12건, 연간 지급명세서 1건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건수는 늘어남
  - 사회보험 관련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아래의 개선방안은 간이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을 가정함

### 가. 간이 지급명세서 중심 통합

-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간이 지급명세서 종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일용), 사업소득<sup>179)</sup>, 기타소득<sup>180)</sup>,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가 있음
  -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이 시행되면 모든 소득의 제출주기와 제출기한은 같아짐
    - 현행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주기와 제출기한이 다름

〈표 IV-2〉 소득별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제출기한

소득	제출주기	제출기한
근로소득(일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기타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179)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함

180)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간이 지급명세서 중심으로 신고서식을 통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통합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주요 항목인 소득별 지급내역,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환급세액 조정, 가산세 등을 포함해야 함
    - 현행 간이 지급명세서의 주요 항목은 근로자별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임
  -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소득은 '총급여액'으로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대상 소득은 '총지급액'으로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연간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소득은 '총급여액'으로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로 제출됨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포섭할 수 없음
  
- 간이 지급명세서 중심 통합은 포섭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이자소득 등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통합할 수 없으므로 통합에 한계가 있음

####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심 통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별 지급내역 및 원천징수세액을 1장의 서식으로 요약하여 나타낸 집계표임
  - 소득자별 소득내역은 간이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원천징수 대상 각 소득에 대한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집계표로 소득자별 소득에 대한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부표 등은 신고서 1쪽 집계표에 담을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 관련 정보로 아래와 같음

- 부표(4~5쪽)는 신고서 1쪽의 특정 소득<sup>181)</sup>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을 작성함
  - 환급(7~9쪽)은 신고서 1쪽에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함<sup>182)</sup>
  - 승계명세(10쪽)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함<sup>183)</sup>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서의 부표로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단순해지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의 불일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심의 통합은 두 개의 신고서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행 환급 등에 대하여 부표로 제출하는 것처럼 간이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임
  - 통합 제출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의 합계액과 간이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의 합계를 신고 즉시 비교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불일치는 소명 요구, 수정신고 등 사후 관리대상이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불일치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은 감소할 것임
- 간이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서식 보완)**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과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서식의 보완이 필요함

181)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을 의미함

18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

183)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 포함되고, 연간 지급명세서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로 제출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간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제출되지만, 간이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기한)** 제출기한이 다름

□ 서식 보안을 통해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음

- (제출 대상소득) 신고서식의 제출 대상소득이 모두 같아지므로 신고 즉시 서식별 대상소득의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세 등과 연간 지급명세서상의 기납부세액과 연동하여 비교할 수 있음

〈표 IV-3〉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 보안 시 서식별 제출 대상금액 비교

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간이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
		현행	서식 보안	
제출 대상소득 <sup>1)</sup>	총지급액	총급여액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sup>2)</sup> + 비과세소득 <sup>3)</sup>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	소득세 등	소득세 등

주: 1) 근로소득의 총지급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 간이 지급명세서상 (급여 등 + 인정상여)

3) 비과세소득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그림 IV-1]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 보완(안)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b>㉑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b>										
원천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지급 내용	⑧ 귀속연도			년	⑨ 지급 시기		[ ] 상반기(1월 ~ 6월) [ ] 하반기(7월 ~ 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명	⑪ 과세소득 (⑫번 합계 + ⑬번 합계)					
<b>㉒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b>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⑬ 내·외국인 거주자구분		⑭ 근무 기간	⑰ 지급월	⑱ 급여 등	⑲ 인정상여	㉑ 비과세 소득	㉒ 소득세 등
	⑬ 성명									
1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2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현행 간이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다른 메뉴를 통해 각각 제출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로 간이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2회 제출이 아닌 1회 제출로 신고횟수가 감소함

- 제출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정부의 태도를 고려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으로 맞추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은 늘어남
    -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했으나<sup>184)</sup><sup>185)</sup> 최종 개정은 말일까지로 추가 연장됨<sup>186)</sup>
    -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통일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으로 맞추어야 함
    - 반면, 2019년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조정되었는데<sup>187)</sup> 제출기한이 단축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앞당길 수 있음
    - 현행 '연간'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다음연도 3월 10일로 2월 소득 지급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동일함
  -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으로 맞추는 경우 정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침
    - 국세청 세수 중 원천분은 2022년 19.65%(근로소득세분은 15.71%)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sup>188)</sup>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인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최대 21일간 징수가 늦어짐
    - 다만, 그 기간만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은 완화됨

18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7. 25.,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1529&fileSn=3](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1529&fileSn=3), p.80

185) 최초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였음

18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9. 8. 27.,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ld1=MOSF\\_000000000029615&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ld1=MOSF_000000000029615&menuNo=4010100), p.3

187) 근로장려금의 본래 신청기간은 상반기 8월 21일부터, 하반기 2월 21일부터였고 2019년 최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8월 25일, 2월 25일로 조정되었다가 최종 정부안에는 9월 1일, 3월 1일로 한 차례 더 조정됨

188) 국세청 세수 중 원천분 비중이 2018년 17.64%에서 2022년 19.65%로 증가함

〈표 IV-4〉 통일된 제출기한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견해 차이

구분	제출기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통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원천징수의무자)</b>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도 10일까지 제출해야 함</li> <li>• <b>(정부)</b> 간이 지급명세서 자료의 조기 확보로 근로장려금 등 세무행정 처리기간이 개선됨</li> </ul>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으로 통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원천징수의무자)</b> 납세협력이 크게 완화됨(10일→말일)</li> <li>• <b>(정부)</b> 원천분 세수징수가 최대 21일간 늦어짐</li> </ul>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서식을 보완하여 간이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로 함께 제출하면 신고절차는 개선되지만 신고기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 간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므로 신고횟수가 감소하고 신고누락을 방지함
  -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불일치를 신고 즉시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신고기한에 대한 정부와 납세자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신고기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세청 세수	283,535,518	284,412,645	277,275,291	334,471,443	384,249,472
원천분	50,011,288	54,188,083	56,525,487	64,519,003	75,505,020
원천분 근로소득세	39,054,569	41,971,242	44,050,712	50,335,329	60,370,406
원천분 비중 <sup>1)</sup>	17.64%	19.05%	20.39%	19.29%	19.65%
원천분 근로소득세 비중 <sup>2)</sup>	13.77%	14.76%	15.89%	15.05%	15.71%

주: 1) (원천분/국세청 세수)\*100

2) (원천분 근로소득세/국세청 세수)\*100

자료 : 국세통계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 2. 소득내역 확인을 통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완화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마다 제출한 근로에 대한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자는 귀속연도, 지급월, 근무기간, 지급자 정보,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V-2]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내역(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을 확인하고 소득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하기] 클릭 → 변경내역 입력 → [등록하기] 클릭(여러 건 등록 후 한번에 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처리결과 조회](#)   [소득부인신청\(근로·사업·기타\)](#)

· 귀속연도     월     [조회하기](#)

**● 본인 소득내역 총액 (근로·인적용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자료: 국세청 홈택스

- ‘소득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근로자는 제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출내역 변경은 ① 근로사실 부인, ② 소득내역임
  - 국세청은 제출내역 변경을 접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신고인지를 판단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됨

[그림 IV-3]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상세내역

● 본인 소득 월별내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 제출 당시 상하이므로 현재 상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부인		귀속 연도	지급월	근무기간	지급자		소득내용		지급 명세서 보기	제출일자
근로 부인신청	처리상태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상호	급여 등	인정상여		
신청하기										

※ 지급명세서 보기는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외부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취소 및 내용 수정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금액 변경

연락처  -  -  ※ 근로부인 신청 진행상황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229-82-00586	상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귀속연도	2023	지급월	01

소득내역	급여 등	당초		변경	
		인정상여	0	인정상여	0
신청사유 <input type="text"/>					

등록하기    신청서 제출하기

자료: 국세청 홈택스

- 영국 등은 우리나라의 ‘소득내역 확인’과 유사한 원천징수 관련 소득확인 또는 원천징수세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득자는 과세관청에 전송되는 본인의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영국은 과세관청이 인증한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sup>189)</sup>하므로, 소득자는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본인의 소득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과세관청 공식 홈페이지의 ‘원천징수관리(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에서 소득자가 직접 근무 관련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원천징수무자에게 전송함
- 일본은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마이너포털 API(マイナポータル)’에서 원천징수의

189) GOV.UK, “Paysli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payslips>, 검색일자: 2023. 12. 25.

무자가 제출한 소득내역, 세금, 사회보험의 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소득자가 조회할 수 있음

- 영국 등의 미제출, 과소신고 등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음
  - 영국은 각 과세연도 한 번의 지연신고에 대하여는 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하고 올바른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 또는 부과하지 않음
    - 미제출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부터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함
  - 프랑스는 미제출, 과소신고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sup>190)</sup>
    -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납부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세금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권리’를 행사하여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다만, 납부세액에 대한 연체이자 대상이 아님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매월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국세청으로 제출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과세관청 모두가 검증하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어려워짐
  
-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과세당사자인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자료 오류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함
  -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중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제출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내역 확인’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190) [impots.gouv.fr., LE DROIT À L'ERREUR EN MATIÈRE FISCALE,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droit-lerreur-en-matiere-fiscale](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droit-lerreur-en-matiere-fiscale), 검색일자: 2023. 12. 25.

- **(소득자료)** 소득자는 ‘소득내역 확인’에서 국세청으로 제출된 본인의 소득자료를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수 있음
  
- 소득자가 오류 변경을 국세청에 요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자의 오류 변경 요청으로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또 다른 납세협력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간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일부 면제해줄 필요가 있음
    -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과세당사자인 소득자의 확인으로 신고의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영국, 프랑스처럼 가산세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 시 연 1회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임
  -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고 소득자의 ‘소득내역확인’을 통해 수정 제출하는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법」처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애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해야 할 때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발급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sup>191)</sup>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sup>192)</sup>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sup>193)</sup>

19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19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또한 현행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은 지급금액인데, 이를 정액금액으로 산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산세 부과기준이 지급금액이므로 동일한 불성실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마다 가산세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이 1억원인 경우와 지급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액이 다름
-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불성실에 대해 정액금액으로 부과함

###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사회보험료 정산을 위해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 또는 소득총액을 신고(이하 '총액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은 보수총액통보서,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신고서로 총 2개의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함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므로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식은 연간 지급명세서 1건, 보수총액신고서 2건임

〈표 IV-5〉 사회보험 정산 관련 신고서식

구분		국민연금 <sup>1)</sup>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 금액	용어	소득총액	보수총액	보수총액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입사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단, 국외근로소득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고서식명		소득(총)액신고서	보수총액통보서	보수총액신고서

주: 1)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사회보험의 신고서식별 신고 및 제출 대상소득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조세의 ‘총급여액’ 금액과 일치함
  - 조세의 연간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되어 제출됨
    - 비과세소득은 비과세항목별 세부내역인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로 제출됨
  - 제출대상 소득금액은 보험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 조세의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국민연금의 소득총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과 같음
    -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sup>194)</sup>을 합산함
    -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과 같음

19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 참조

- 사회보험료의 최종 정산기준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로 사회보험의 정산을 위한 신고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과 각 사회보험공단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일한 소득자료를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기관마다 제출해야 함
  - 사회보험공단은 보수총액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안내 활동을 하고 있고, 신고된 서류를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는 행정처리를 해야 함
  
-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처럼 다른 사회보험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총액신고 의무를 면제할 제도가 필요함
  - 이는 과세관청의 자료로 사회보험의 총액신고를 갈음하는 것을 의미함
    - 동일한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해 하나의 신고로 다른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의 총액신고에도 적용하는 것임
    - 하나의 신고로 다른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① 사업·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는 제도, ②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지급명세서를 함께 접수하도록 과세관청 정보기입란을 입력한 경우, 일용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등이 있음
  -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사회보험공단의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나아가 사회보험기관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한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간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료가 공유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총액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4. 사회보험의 업무포털사이트 일원화

□ 현행 사회보험 신고업무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이루어짐

-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등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sup>195)</sup>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사회보험 인터넷포털 서비스로 공통서식 등을 기관별 개별접수가 아닌 포털사이트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임
  - 접수된 신고는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험기관 간 상호 연계함
- 신고 종류로는 사업장업무(성립, 내용변경, 탈퇴 등), 가입자업무(자격취득, 내용변경, 자격상실, 피부양자신고, 휴직 등, 보수월액, 이직확인서, 국민연금소득층액신고 등), 지역가입자업무(자격취득, 자격상실 등)가 있음
  - 자격신고 관련 공통서식뿐 아니라 보험별 고유서식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데 보험별 고유서식은 4대사회보험 기관 일선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외 신고 관련 업무포털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EDI’,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함

□ 반면 현행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이루어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보험사무 간소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통합 징수하고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단, 국민연금 반납금·추납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연납·분기납, 피보험자격득실 관련 등 징수업무 외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자가 별도로 해당하는 공단에 문의해야 함

19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개, <https://www.4insure.or.kr/pbiz/feii/sinsCntrIntroView.do>, 검색일자: 2024. 2. 1.

- 현재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포털사이트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의무자는 공통서식을 하나의 포털사이트에 제출하더라도 별개의 신고를 위해 공단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공통서식으로 취득신고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한번 하더라도 정정사항이 생길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에 별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수정해야 함
    - 또한 신고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포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함
  - 사회보험 관련 행정업무를 하나의 포털사이트로 일원화한다면 신고자의 편익을 위하고 신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5. 개선방안의 한계

- 본 연구는 현행 제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함
- 개선방안 1인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의 경우 원천징수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수정신고 등과 같은 비경상적인 사건의 경우 조세와 사회보험을 연계하여 대응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는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개선방안 3인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생략'의 경우 과세관청의 소득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과세관청과 사회보험기관의 소득공유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연간보험료 정산의무는 사회보험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회보험기관은 매월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있음
-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정보가 아닌 당해연도 소득정보로 부과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음
  - 현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정산이 필요<sup>196)</sup>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이 없음
- 다만, 국민연금은 당해연도 부과체계에 대한 저항이 예상됨
  - 국민연금의 경우 연간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정산이 없고, 수급액 계산 시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반영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제도의 부분별 통합이므로, 향후 조세와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통합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

196) 전년도 소득정보로 연간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다음연도의 보수총액 또는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정산함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실무』, 2020. 5.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3. 6.

김혜진·문현경, 「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논의와 향후 과제」, 『사회복지정책』, 2022. 6.

최인혁·정훈,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2021 국세행정 포럼』,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

이병희,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 6.

이수연·엄혜연·류재현·이현지,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제4권 프랑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2. 12.

이한우,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재(再)개정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계간 세무사』, 2022년 여름호, 2022.

정훈·이미현·권정교·김치울, 『조세-사회보험 사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11.

정훈·권순오·권정교, 『근로소득 납세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흐름: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재정보럼』, 2009년 9월호 제159호, 2009. 9.

## 2.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근로기준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득세법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영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 영국 「재무부 규정(Regs.)」
- 프랑스 「조세일반법」

프랑스 「사회보장법」

덴마크 「근로자재해보상법(Bekendtgørelse af lov om arbejdsskadesikring  
(Arbejdsskadesikringslovens))」

덴마크 「원천징수세법(Kildeskatteloven)」

일본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3. 웹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6905>

덴마크 Life in denmark.dk, <https://lifeindenmark.borger.dk/>

덴마크 공공행정기관, <https://www.borger.dk/>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https://sktst.dk/>

덴마크 국세청, <https://info.skat.dk/>

덴마크 기업청, , <https://virk.dk/>

덴마크 노동시장보충연금기관(ATP Livslang Pension), <https://www.atp.dk/en>

덴마크 노동시장보험기관, <https://www.aes.dk/>

- 스웨덴 국세청, <https://www.skatteverket.se/>
-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디지털청 마이너포털, <https://myna.go.jp/html/api/tetsuzukishinsei/index.html>
- 일본 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
- 일본전국건강보건의연합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 <https://www.kyoukaikenpo.or.jp/>
- 프랑스 경제부, <https://www.economie.gouv.fr/>
- 프랑스 고용서비스센터(Pole Emploi),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
- 프랑스 사회보장기관(Urssaf), <https://www.urssaf.fr/portail/home.html>
- 프랑스 정부, <https://www.impots.gouv.fr/accueil>
- 프랑스 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
- 프랑스 정부, <https://www-test.impots.gouv.fr/p>
- PWC, <https://taxsummaries.pwc.com/>
- PWC, <https://www.pwc.com/>
- EY, <https://www.ey.com>
- Minformation, <https://www.mintformations.co.uk/companies-house-registration/>
- THE WORLD BANK, <https://archive.doingbusiness.org/>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

발 행 2023년 12월 31일

저 자 박주철·권정교·유승혜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72-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